

전략목표 E.2. 과도한 군비를 줄이고 무장가능성을 통제한다.

향후활동

143. 정부:

- (a) 군사자원 및 관련산업을 개발과 평화적 목적으로 전용할 것을 증강하고 서두르며 적절한 곳에 국가안보를 실시한다.
- (b) 특히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추가재정의 가능한 할당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요구를 감안하면서 세계적 군비, 무기통상 및 무기생산 및 구입에의 투자를 포함하여 과도한 군비의 적절한 감소 등을 통하여 새로운 공공 및 민간 재정자원을 창출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도록 추진한다.
- (c) 무력분쟁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국제인도주의법 침해와 여성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르는 경찰, 보안 및 무장인력 및 기타요원들을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행동을 취한다.
- (d) 합법적인 국가방위요구를 인정하는 한편, 특히 사람을 해치거나 무차별한 결과를 낳는 무기의 통상거래, 과도한 군비와 무기생산 및 구입에의 과도한 투자의 부정적인 영향과 무력분쟁의 사회에 미치는 위협을 인식하고 또한 이를 표명하고; 불법무기통상, 폭력, 범죄, 불법마약의 생산, 사용, 거래,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등을 퇴치할 필요를 인식한다.
- (e) 여성과 아동은 특히 대인살상용지뢰의 무분별한 사용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인식하고서:
 - (i) 1981년 심각하게 해를 입히거나 무분별한 영향을 가질수 있는 특정재래무기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 특히 무기, 위장폭탄과 다른 무기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의정서(의정서 II)26/에 아직 비준을 하지 않았다면 2000년까지 세계적인 비준을 목적으로 그 비준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한다.
 - (ii) 투하폭탄의 무분별한 사용에 의해 사상자의 감소와 민간인에게 입힌 극심한 고통의 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협약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 (iii) 특히 지뢰제거방법 측면에서 정보의 교환, 과학기술의 전이와 과학연구의 도모를

촉진함으로써 지뢰제거에 지원을 증진하도록 도모한다.

- (iv) 유엔맥락내에서 불필요한 차별없이 공통적인 지원대응프로그램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도록 도모한다.
- (v) 많은 국가들이 대인살상용 무기의 수출, 양도 또는 매매에 관한 일시중지를 이미 선언했음을 만족스럽게 주목하면서 만일 이들이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비정부개체를 포함하여 이들에게 지뢰의 수출에 관한 일시중지를 가능한 빠른 시일에 채택한다.
- (vi) 국가들은 가능하고 인도적인 대안이 개발될 때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의 궁극적인 제거를 목적으로 대인살상용 지뢰에 의해 야기된 문제해결을 찾기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더욱 장려하도록 도모한다.
- (f) 여성이 평화운동에서 수행해 왔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면서:
 - (i)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하에서 일반적이고 완전한 무장해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 (ii) 모든 분야에서 핵무기확산 및 무장해제의 금지에 기여하는 보편적이고 다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입증가능한 종합적인 핵실험금지조약을 즉각 도출해내는 결론에 관한 협상을 지지한다.
 - (iii) 종합적 핵실험금지조약이 발효하는 동안에 핵실험과 관련하여 최대한의 규제를 행사한다.

전략목표 E.3. 비폭력적 형태의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분쟁상황에서 인권남용의 사건을 감소한다.

향후활동

144. 정부:

- (a) 1949년 전쟁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국제적 무력분쟁의 희생자보호(의

정서 I) 및 비국제적 무력분쟁의 희생자 보호(의정서 II)에 관한 1949년 제네바 협약에 대한 추가의정서 등을 포함하여 무력분쟁하의 여성과 아동보호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국제문서에 대한 비준 또는 가입을 고려한다^{24/}.

- (b) 무력분쟁에서의 국제인도주의법의 규범을 충실히 존중하고, 특히 강간, 강제매춘과 기타 다른 형태의 강제폭력 행위에 대해 여성과 아동의 보호에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한다.
- (c) 유엔사무국의 여성지위개선을 위한 전략적 행동계획(1995~2000)에서 사무총장의 특별권고에 주목하면서 평화유지, 사전외교 및 관련 활동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정책 입안을 하거나 혹은 영향을 미칠수 있는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그리고 평화중재 및 협상의 모든 단계에의 모든 의사결정차원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고 평등한 대표성을 도모한다.(A/49/587, sect. IV)

145. 정부, 국제 및 지역기구:

- (a) 식민지 혹은 다른 형태의 외국인통치 또는 외국인점령하의 모든 사람들의 자기결정권리와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선언과 행동프로그램^{2/}에 명시된 대로 이러한 권리의 효과적인 실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 (b) 유엔헌장 특히 2조 3,4항에 의거하여 분쟁에 대한 외교, 협상, 평화적 해결을 권장한다.
- (c) 전쟁 및 인종청소의 의도적 도구로서 여성에 대한 조직적 관행인 강간과 다른 형태의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대우를 규명하고 규탄할 것을 촉구하고 그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재활을 위하여 그러한 확대를 받는 희생자에게 완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d) 무력분쟁중에 행한 강간은 전쟁범죄에 해당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집단학살 범죄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정의된 대로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27/}; 그러한 행위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모든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처벌하고 가해자를 법에 비추어 처단하기 위한 기제를 강화한다.
- (e) 무력 및 기타 행위의 분쟁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인도주의 법과 국제인권문서에 명시된 기준을 지지하고 강화하고; 특히 조직적 강간,

강제매춘과 기타 형태의 음란한 폭력 및 성적 노예화를 포함하는 전쟁중에 범해진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행위의 완전한 조사를 이행하고;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에 책임있는 모든 범죄자를 처벌하고 여성희생자에게 완전한 구제를 제공한다.

- (f) 국제사회로 하여금 테러행위를 규탄하고 테러행위의 모든 형태와 발현에 대응하도록 요청한다.
- (g) 인도주의 국제법과 인권의식에 관한 모든 관련 인력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성인지 관심을 고려하고,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할 목적으로 유엔의 평화유지 및 인도주의적 지원에 가입하는 이들에게 그러한 훈련을 권고한다.
- (h) 그들의 영향을 받는 국가의 국민 특히 여성과 아동에 의해서 경제사회적 발전의 완전한 성취를 방해하고 또한 그들의 복지를 방해하고 또한 건강, 복지, 의료보호와 필요한 사회서비스 등에의 적절한 삶의 기준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을 완전히 향수하는데 장애를 일으키는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일치하지 않는 어떠한 일방적인 조치의 채택을 지지하고 못하게한다. 이 회의는 식량과 의약이 정치적 압력 도구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을 재확인한다.
- (i) 여성과 아동의 경제적 제재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목적으로 국제법에 의거한 조치를 취한다.

전략목표 E.4. 평화의 문화를 배양하는데 여성의 기여를 도모한다.

향후활동

146. 정부, 국제 및 지역의 정부간 기구와 비정부기구:

- (a) 특히 젊은 여성을 위한 교육, 훈련, 지역사회 행동과 청년교류 프로그램을 통하여 평화적 분쟁 해결과 평화, 화해 및 관용을 도모한다.
- (b) 여성과 아동에 대한 무력분쟁의 영향과 국가·지역·국제적 평화운동에의 여성참여의 성격과 공헌에 대해 검토하기 위하여, 여성의 참여를 포함하는 평화연구의 개발을 더욱 권장하고; 폭력을 포함하며 공공확산 및 남성과 여성에 의한 사용을 위한 분쟁해결을 위한 혁신적 메카니즘을 규명하고 연구를 실시한다.

- (c) 분쟁의 결과를 표명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목적으로 여성, 특히 젊은 여성과 소녀에 대한 무력분쟁의 신체·심리·경제·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를 개발하고 확산한다.
- (d) 비폭력적 수단과 관용의 도모에 의한 분쟁해결에 중점을 두고 평화의 문화를 배양하기 위해 소년과 소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설정을 고려한다.

전략목표 E.5. 피난민여성,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타의 난민여성과 국내난민여성에 대한 보호, 지원과 훈련을 제공한다.

향후활동

147. 유엔고등난민판무관 사무소와 세계식량기구(WFP)를 포함하여 피난민여성,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타의 난민여성과 국내난민여성에 대한 보호, 지원, 훈련을 제공하는 데 관련하는 정부, 정부간 및 비정부간 기구와 기타 관련기구:

- (a) 피난민여성, 국제적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타난민여성과 국내난민여성에게 난민수용소와 자원의 관리를 포함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단기 및 장기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기획, 구상, 실시, 모니터링과 평가에 있어서 여성이 완전히 개입되도록 도모하는 조치를 취하고; 피난민과 난민여성 및 소녀들이 제공받는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기회를 갖도록 도모한다.
- (b) 그들의 국가내에서 피난민여성과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이동을 금지할 목적으로 이동의 근본원인에 대한 원인을 찾고 적절한 때에 그들의 귀환 또는 재정주를 촉진한다.
- (c) 피난민여성, 국제적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타난민여성과 국내난민여성들이 이동하는 기간중에 그리고 그들의 원래의 사회로 복귀할 때 재활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이들의 안전과 신체적 통합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피난민 또는 난민여성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어떠한 폭력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들 책임자들을 법에 비추어 처벌한다.
- (d) 난민에 대한 비억압원칙을 완전히 존중하고 엄격하게 준수하는 한편 피난민 및 난민여성들이 그들의 원래자리로 안전하게 그리고 존엄성있게 자발적으로 돌아갈 권리와

돌아간 후에 보호받을 권리를 도모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e) 유엔현장에 의거하여 적절하게는 국제협력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모국으로 자발적이고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난민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해결을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f) 국제사회와 국제기구는 긴급구호를 위한 재정적 및 기타자원과 난민여성,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타 난민여성과 국내난민여성의 특정한 요구, 자원과 잠재력을 고려하는 기타 장기적 지원을 제공받도록 도모한다.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열대병을 퇴치하기 위한 재생산 보건의로 및 모성보호와 서비스를 포함하여 적절한 식량, 음료와 쉼터, 교육 및 사회보건서비스에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위해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g) 피난민 및 난민아동간의 학교교육의 중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상황에서는 물론 적절한 언어로 교재의 사용을 촉진한다.
- (h) 난민결정절차와 피난처의 양도에 있어서 특히 국가의 입국규정을 적절한 국제문서와 일치시키게 함으로써 비억압원칙에 대한 완전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를 포함하여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접근 및 평등한 대우를 도모하기 위해 국제규범을 적용하고, 난민의 신분을 요구하는 이들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은 난민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28/과 1967년 의정서29/에 제시되어 있는 이유의 성폭력을 통한 박해 또는 기타 성 관련 박해를 포함하는 박해 등에 대한 근거확실한 우려에 기반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성폭행과 같은 민감하거나 고통스러운 경험에 관한 여성을 면담하기 위해 여성공무원을 포함하여 특별히 훈련된 요원들에게 접근기회를 제공한다.
- (i) 특별히 여성이 목표로 된 학대의 반응에 대한 기준 및 지침의 개발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지지하고 도모한다. 이를 위해 그러한 기준과 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의 주도적 역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한 이의 공정하고 지속적인 적용을 도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한다.
- (j) 피난민여성과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타난민여성과 국내난민여성의 자조 능력을 도모하고 난민 및 귀환자 집단내의 리더쉽, 의사결정직의 여성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k) 피난민 및 난민여성의 인권이 보호되고 또한 피난민 및 난민여성이 이들 권리를 인식

하도록 도모하고 가족재결합의 절대적인 중요성이 인정되도록 도모한다.

- (l) 피난민으로 결정된 여성에게 적절한 대로 언어훈련, 소규모기업 개발훈련과 기획 및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상담을 포함하는 직업/전문적 훈련프로그램에의 접근을 제공한다. 이들은 고문과 외상의 희생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정부와 기타 공여자는 특히 많은 난민인의 증대하는 요구로 인한 받아들인 국가 측에 미친 영향과 공여자기반을 넓히고 보다 넓은 책임분담을 이를 필요성을 고려하여 피난민여성,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타 난민여성과 국내난민여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에 적절히 기여해야 한다.
- (m) 난민여성들이 재정주국가에 대한 기여에 대한 공공인식을 높이고, 그들의 인권과 요구, 능력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문화·인종간 조화를 촉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상호간의 이해와 수용을 장려한다.
- (n) 테러행위, 폭력, 마약 밀매 또는 폭력상황과 관련된 기타의 이유의 결과로서 그들이 태어난 곳에서 쫓겨나는 여성에게 기본적으로 지원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o)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개발하고, 무력분쟁영역과 난민이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인 및 경찰요원에게 인권교육과 훈련을 적절하게 제공한다.

148. 정부:

- (a) 난민여성보호에 관한 유엔고등난민판무관지침과 외상 및 폭력희생자의 평가 및 보호에 관한 유엔고등난민판무관지침을 확산시키고 이행하며 혹은 난민여성과 긴밀히 협력하고 그리고 모든 부문의 난민프로그램에 이와 유사한 지도를 제공한다.
- (b) 가족구성원으로서 이주한 여성과 아동이 스폰서에 의한 인권의 남용 또는 거부로부터 보호하고, 가족관계가 해체되었다면, 국가법률로 정한 범위내에서 체재기한을 연장할 것을 고려한다.

전략목표 E.6. 식민지 및 비자치영역의 여성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향후활동

149. 정부, 정부간 및 비정부기구:

(a) 특히 비엔나선언과 행동프로그램에 명시되었듯이 의사결정을 위한 지도력 및 훈련에 특별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자기결정권리의 실시를 지원하고 촉진한다.

(b) 식민지 및 비자치영역의 여성상황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끌어내기 위해 적절하게는 매스미디어, 모든 차원에서의 교육, 특별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공의식을 높인다.

F. 여성과 경제

150. 사회의 경제구조에 대해 힘을 행사하기 위한 남성과 여성의 접근 및 그 기회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여성은 재정, 금융, 상업 그리고 그의 경제정책을 포함한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실제로 배제되어 있거나 매우 낮은 대표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종종 개인 남녀가 무상과 유상의 근로간에 그들의 시간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결정과 같은 정책구조내에 있기 때문에, 이들 경제구조 및 정책의 사실상의 발달은 경제적 자원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접근과 이들의 경제적 권력 결국은 일반사회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차원에서 남녀간의 평등의 정도 등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151. 많은 지역에서 임금근로에 여성의 참여는 공식 및 비공식 노동시장 양쪽에서 증가했으며 지난 10년동안에 변화했다. 여성들이 농수산업에서 계속적으로 일하는 한편 중소기업에서도 점차로 많이 일하게 되었으며 늘어나는 비공식부문에서도 더욱 증가했다. 많은 여성들은 어려운 경제적 조건과 성불평등으로 인한 교섭력의 부족으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왔으며 이에 따라 보다 선호하는 근로자가 되기도 하였다. 반면에 여성들은 그들의 권리를 인식하게 되고 이를 요구하게 되면서 점증적으로 스스로의 선택으로 노동시장에 들어갔다. 작업장에 들어가서 승진하는데 성공하는 이들도 있었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들은 고용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제상황과 경제구조 재조정에 따르는 심각한 영향을 받아오면서 때로는 일자리를 잃기도 했는데 이는 숙련, 전문직 여성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더우기 많은 여성들은 다른 기회의 부족으로 비공식부문에 들어갔다. 여성의 참여와 성관심사는 그 규정을 정의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구조조정 프로그램, 대부과 기여금 등의 목표를 설정하는 다자간 기관의 정책입안과정에서 여전히 대부분 배제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 통합되어야 한다.

152. 생산자원에의 접근 결여, 가족에 대한 책임의 불균등분배뿐 아니라 교육, 훈련, 고용,

임금, 승진 그리고 업무의 수평이동 과정에서의 차별은 양육문제에 따르는 시설부족문제와 결부되어 여성의 고용, 경제적, 전문적 및 기타의 기회 및 이동성을 계속적으로 제한하고 이들의 참여를 곤란하게 한다. 게다가 태도상의 장애는 경제정책 개발에 여성의 참여를 가로막고 어떤 지역에서는 여성과 소년의 경제적 경영을 위한 교육 훈련에의 접근을 제한한다.

153.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무보수노동의 책임이 줄지 않은 채 노동력상의 여성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거의 모든 곳에서 여성들이 가정 바깥에서 더 많이 일하고 있다. 여성의 수입은 모든 형태의 가구에 점차적으로 필요하게 되어가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여성의 기업경영, 기타 자영업, 특히 비공식부문에서의 활동이 증가해 왔다. 많은 국가에서는 여성이 임시직, 시간제 노동, 계약직, 가내고용과 같은 비정규노동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54. 국내노동자는 물론, 여성이민노동자는 송금을 통해서 본국에, 노동력의 참여를 통해서 는 거주하는 나라에 경제적으로 기여한다. 그러나 여성이민자는 거주국에서 본국의 노동자 그리고 남성이민노동자에 비해 보다 높은 실업상태에 있다.

155. 성분식에 대한 불충분한 관심은 여성의 기여와 관심이 경제구조에서 너무나 자주 무시 되는 상태에 처하는 것을 뜻해왔다. 즉 가족과 가구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과 제도, 노동시장, 경제학, 경제사회학적 하부구조, 세계 그리고 사회보장체계와 같은 경제구조에서도 무시되고 있다. 이 결과로 많은 정책과 프로그램은 남녀불평등에 계속 기여할 것이다. 성관점을 통합하는데 진전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프로그램과 정책효과도 역시 향상되어 왔다.

156. 많은 여성이 경제구조에서 향상되었다 해도 대다수의 여성 특히 첨가된 장애, 계속적인 장벽에 직면하는 이들에게는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그들 자신과 부양가족을 위한 지속가능한 생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해 왔다. 여성은 임금근로와 자급자족적 농수산업 으로부터 비공식부문에 걸쳐서 때로는 서로 연관하기도 하는 다양한 경제영역에서 활발하다. 그러나 임금격차뿐 아니라 토지, 천연자원, 자본, 대출, 기술 및 기타 생산수단의 소유 또는 접근기회에서의 법적관습적 장애는 여성의 경제적 발전을 저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여성은 임금근로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무임금 근로를 통해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으로 여성은 시장 및 가사소비를 위해 상품생산과 서비스에 참여하고, 농업, 식량생산 또는 가족기업에 참여하고 있다. 국가통계 유엔체계 및 노동통계 국제기준에도 포함되어 있는 이 무보수 노동은 특히 농업과 관련하여 가끔 평가절하되고 계산이 되지도 않는다. 또한 편으로 여성은 여전히 대부분의 무보수 가사노동과 지역사회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는 아동과 노인을 부양하고, 가족을 위한 음식마련, 환경보호, 취약하고 혜택을 못받는 개인 과 그룹에 대한 자발적인 도움의 제공 등이 있다. 이 일은 수량적으로 측정이 되지 않기도

하고 국가통계로 측정이 되지도 않는다. 발전에 대한 여성의 기여는 심각하게 평가절하되며 따라서 그 사회적 인식도 낮다. 이 무보수 노동의 형태, 범위와 분배에 대한 완전한 가시성은 보다 나은 책임분배에도 기여할 것이다.

157. 어떤 새로운 고용기회가 경제의 세계화 결과로서 여성에게 주어졌지만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을 악화시켜왔던 경향도 있다. 동시에 경제통합을 포함한 세계화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무역변화의 패턴으로서 새로운 고용원(source)을 찾도록 여성의 고용상황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세계화가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보다 더 요구된다.

158. 이 경향은 공식, 비공식 부문에서 여성의 직업적 건강과 안전과 관련하여 사회보장과 직업안정의 부족, 낮은 기술수준, 열악한 노동환경, 저임금, 거의 전무한 노동기준으로 특징 지어져 왔다. 여성의 실업은 많은 나라와 여러부문에서 심각하고도 증대하는 문제이다. 비 공식 및 농업부문의 젊은 노동자와 이주여성노동자는 노동 및 이민법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를 가진 세대주 여성들은 비탄력적인 노동조건과 남성과 사회에 의해 가족책임의 부적절한 분담 등의 이유로 고용기회에서 제한을 받는다.

159. 근본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나라에서는 잘 활용만 된다면 여성의 기술은 각국가의 경제생활에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이다. 이들의 자원투입은 계속 발전이 되고 지원을 받아야 하고 나아가 그들의 잠재력이 실현되어야 한다.

160. 사적영역에서의 고용부족, 그리고 공적서비스 및 서비스직의 감소는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끼쳐왔다. 어떤 나라에서는 특히 공적 서비스가 이용될 수 없을 때 여성은 아동과 병약자 또는 노인의 보호, 받지못한 가사임금에 대한 보상과 같은 더많은 무보수 노동을 한다. 많은 경우, 고용창출 전략은 여성이 우세한 직업과 부문에 충분한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또한 전통적인 남성영역 및 직업에 여성의 접근을 적절하게 도모하지 않았다.

161. 임금노동을 하는 여성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그들의 잠재력 성취를 방해하는 장애를 겪는다. 어떤 이들은 경영직의 낮은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태도상의 차별은 그들이 보다 발전하는데 장애가 된다. 성희롱의 경험은 근로자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며 여성이 그들의 능력에 비례하는 기여를 하는데 장애가 된다. 적절하고 제공가능한 아동보호의 결여를 포함한 가족우호적인 환경의 결여와 비탄력적인 노동시간도 여성의 완전한 잠재력을 성취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162. 국가간 및 국가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에서 여성은 차별적 고용, 승진정책과 관행을 나타내면서, 경영과 정책 차원에서 대부분 배제되어있다. 가능한 고용기회의 한정된 수 뿐

만 아니라 비우호적인 노동환경은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대안을 찾게해 왔다. 여성은 점증적으로 자영업이 되었고 크고 작은 규모의 기업경영자와 소유자가 되었다. 많은 나라에서 비공식부문의 확장, 자영업, 독립기업의 확대는 상당부분 여성이 이루었다. 생산과 무역에서의 여성의 협력적이고 자립 및 전통적인 관행과 주도적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경제적 자원임을 보여준다. 여성이 자본, 신용과 기타 자원들, 기술과 훈련에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여성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산, 마케팅,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163. 계속적인 불평등과 현저한 발전이 공존하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고용정책의 재고는 성관점을 통합시키고, 노동과 고용의 현행 패턴에 관한 부정적인 성적합의를 언급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고용범위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경제에 대한 남녀의 공헌에서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남녀모두가 근로, 경험, 지식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데 대한 평등한 인식과 영향의 평가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64. 여성의 경제적 잠재력과 자립을 논의할 때 정부와 기타 활동주체는 정책결정전에 남녀 각각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관점을 주류로 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을 도모해야 한다.

전략목표 F.1. 고용, 적절한 노동조건에의 접근 그리고 경제자원에 대한 통제를 포함하는 여성의 경제적 권리 및 자립을 증진한다.

향후활동

165. 정부:

- (a)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에 대한 남녀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 (b) 특히 나이든 여성근로자들, 고용과 승진, 고용보험과 사회보장의 확대, 노동조건을 고려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성에 근거한 차별에 대한 법률 채택하고 이행한다.
- (c) 고용거부 및 임신 또는 수유로 인한 해고 또는 피임기구 사용요구와 같이 고용주에 의한 차별적 관행을 없애고 여성의 재생산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임신한 여성, 출산휴가중인 여성 또는 육아후에 노동시장에 재입직한 여성이 차별

받지 않도록 도모하는 효과적 방안을 강구한다.

- (d) 여성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참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재정 및 무역부처, 국가경제위원회, 경제연구기관 및 핵심부서를 통해서 여성이 정책입안 및 구조조정에 완전하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메카니즘을 고안하고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
- (e) 여성에게 남성처럼 토지 및 다른 재산, 상속, 천연자원, 적절한 새로운 기술의 소유권 및 통제의 접근을 포함하여 경제자원에의 평등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법적 개혁을 이행한다.
- (f) 여성에 대한 현존하는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소득 및 상속세 및 사회보장제도의 검토를 실시한다.
- (g) 노동과 고용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지식을 개발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부양가족을 돌보기 위한 노동과 가족농장 또는 사업을 위한 무보수노동 등의 무보수노동의 유형, 범위, 분배를 측정하고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부문에서의 연구와 경험에 관한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장려하고 이에 가능한 핵심적 국가재정과 별도로 산출되는 것을 고려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한다.
- (h) 남녀모두에게 평등한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재정기구의 운용을 감독하는 법률 검토, 개정한다.
- (i) 적절한 수준에서 예산집행을 보다 공개적이고 공명하게 하도록 촉진한다.
- (j) 여성에게 전통적인 저축, 신용 및 대출기제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을 개정하고 이행한다.
- (k) 국제적, 지역적 무역협정과 관련된 국가정책이 여성의 새롭고 전통적인 경제활동에 반하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 (l) 초국가적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기업은 환경과 기타관련법을 포함하여 국내법 및 규약, 사회보장 규정, 적용가능한 국제조약, 문서 및 조약에 따를 것을 도모한다.
- (m) 가족책임의 공유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동패턴의 재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정책을 조정한다.
- (n) 경제부처와 재정기구에 의해 개발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입안하는데 여성노동자와

여성기업인이 기여할 수 있도록 메카니즘과 기타의 포름을 수립한다.

- (o) 평등기회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사 양부문에서의 적극적인 조치를 채택하고 준수를 도모한다.
- (p) 재조정정책과 영향이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을 감시하기 위해 거시 및 미시경제사회정책의 개발에 성영향에 관한 분석을 사용한다.
- (q) 여성이 기술, 경영, 기업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파트너로서 힘을 증진하기 위해 성인 지 정책과 조치를 추진한다.
- (r) 안전한 노동관행, 조직할 권리와 정의에의 접근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노동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노동법의 확립을 지원하는 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국가정책을 수립한다.

전략목표 F.2. 여성의 자원, 고용, 시장 및 무역에의 평등한 접근을 촉진시킨다.

향후활동

166. 정부:

- (a) 여성의 자영업과 소규모기업의 개발을 추진, 지원하고, 적절한 대로 재정기관과의 혁신적 연계망 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및 상호신용체계를 포함하여 여성의 기업가정신을 추진하는 전담기구의 확대를 통하여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신용과 자본에의 접근을 강화한다.
- (b) 남성과 여성의 평등기회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가 고용주로서의 고무역할을 강화한다.
- (c) 국가 및 지방차원에서 생산자원, 토지, 대출, 자본, 재산권 및 개발사업 및 협동체계에 농촌여성의 평등한 접근과 통제를 촉진함으로써 그들의 수입창출 가능성을 높인다.
- (d) 영세소규모기업, 신소규모기업, 협동기업, 확장시장과 기타 고용기회를 촉진하고 강화하며, 적절한 곳에 특히 농촌지역에서 비공식부문에서 공식부문으로 이동을 촉진한다.
- (e) 식품안전에서 여성의 중대한 역할을 인식하고 강화하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창안하고

수정하며, 임금 및 무임금 여성생산자들 특히 도시기업뿐만 아니라 농업, 수산업 및 양식어업과 같은 식량생산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지방 및 지역차원에서 적절한 기술, 수송, 현장지도사업, 시장과 신용에의 평등한 접근을 촉진한다.

- (f) 여성협동조합이 필요한 서비스에의 접근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적절한 메카니즘을 확립하고 부문간 제도를 권장한다.
- (g) 기술지원을 제공하거나 경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성현장지도자와 기타공무원의 비율을 높인다.
- (h) 농촌 및 도시지역에서 여성이 소유한 중소기업에 대해 차별하지 않도록 도모하기 위해 사업, 상업 및 계약법 및 정부규정을 포함하여 정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재입안하고 이행한다.
- (i) 부문간, 정부부처간 정책과 프로그램 및 예산에서 고용된 여성과 자영업 및 기업경영 여성의 요구와 이해를 통합시키는 정책을 수행하고 조정, 분석, 권고한다.
- (j) 전통적 고용분야에만 한정되지 않는 효과적인 업무훈련, 재훈련, 상담 및 배치서비스에 여성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 (k) 사적 및 개인적 발의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및 개발 프로그램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정책 및 규정상의 장애를 제거한다.
- (l)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 즉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연대의 자유, 단체교섭권과 조직의 권리, 남녀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등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존중을 촉진한다.

167. 정부, 중앙은행과 국민개발은행, 민간 금융기관 등 적절하게:

- (a) 모든 부문과 단체의 여성기업가를 포함하여 그들이 경제부처와 금융기관이 개발중인 정책 및 사업의 입안과 검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와 기타 포럼에의 참여를 늘린다.
- (b) 농촌 및 도시지역에서 여성기업가와 생산자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는 중개수단의 개발 및 동기부여를 통해서 대출 및 용자를 늘릴 수 있도록 금융부문을 활성화하고, 그들의 리더십, 기획 및 의사결정에 여성을 포함한다.
- (c) 영세소규모 및 중규모 기업에 종사하는 농촌 및 도시여성 특히 젊은 여성, 저임금여

성, 소수 인증집단여성, 자본과 자산에의 접근이 결여된 토착민여성 등에게 미치는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여성의 중소기업의 대출과 기타 재정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재정기관의 직·간접적 노력을 지원하는 재정적 감독 및 규정개혁을 규명하고 장려함으로써 재정시장에 여성의 접근을 확대한다.

- (d) 상수도, 위생, 전기시설, 에너지 보존, 수송 및 도로 건설과 같은 경제하부구조를 위한 공공투자사업에 여성의 우선순위가 포함되도록 도모한다. 직업과 계약에의 접근을 도모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기획과 실시에 여성수혜자를 보다 많이 개입할 것을 추진한다.

168. 정부와 비정부기구:

- (a) 시장, 무역, 자원정보를 확산할 때 여성의 요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 분야에 적절한 훈련을 제공한다.
- (b) 정부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지역공동체 경제발전 전략을 장려하고 민간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직업창출을 권장하고 개인·가족·지역사회의 사회적 상황을 제기한다.

169. 국제·지역 및 소지역 차원에서 양자간 및 민간자금기구:

- (a) 보다 높은 비율의 자원이 농촌 및 외딴 지역에 사는 여성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모하는 정책과 사업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재입안하고 실시한다.
- (b) 여성의 경제활동을 목표로 하는 중개제도를 재정지원하기 위한 탄력적 자금조정을 개발하고 여성의 경제적 기업의 증가된 능력과 수익성, 자금자족성을 촉진한다.
- (c) 중·소규모 기업부문에 여성이 완전하고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효과성을 증진시키고 조정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하여, 양자간 기구, 정부 및 비정부기관과 그들 고유의 기관으로부터 전문성과 재정지원을 끌어냄으로써 그러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한다.

170. 국제, 다자간 및 양자간 개발협력기관:

자본 그리고/또는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공식 및 비공식 양부문의 저임금, 중소기업 여성기업가 및 생산자를 지원하는 재정적 제도를 지원한다.

171. 정부 그리고/또는 다자간 재정기관:

그래민 은행의 원형의 재현을 방해하는 공식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재정제도의 규칙과 절

차를 검토한다.

172. 국제기구:

특히 취약계층 여성가운데 지속가능하고 생산적 기업활동을 추진하도록 고안된 사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전략목표 F.3. 특히 저임금 여성들에게 시장, 정보, 기술에의 접근기회 및 사업서비스와 훈련을 제공한다.

향후활동

173. 비정부기구 및 사적부문과 협력하는 정부:

- (a) 여성, 남성 기업가에게 평등한 시장접근을 도모하는 공적인 하부구조를 제공한다.
- (b) 사업운영, 상품개발, 재정, 생산 및 품질관리, 유통 및 사업의 법적 측면에서 여성에게 특히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있어서의 훈련 및 재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c) 특히 농촌 및 외딴 지역에 사는 저임금 및 빈곤여성에게 시장 및 기술에의 접근기회를 알리는 원조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러한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d) 여성의 사업을 위한 투자기금을 포함하는 비차별적 지원서비스를 창안하고 무역촉진 프로그램에 특히 저임금여성을 목표로 한다.
- (e) 전통적, 비전통적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성공한 여성기업가와 성공하는데 필요한 기술에 관한 정보를 확산시키고 정보망 형성과 정보교환을 촉진한다.
- (f) 실업여성, 편부모, 가족책임 및 기타 이유로 취업 일시중단후에 노동시장에 재입직한 여성, 새로운 생산 형태 또는 긴축에 의해 해고된 여성을 포함하는 이들여성의 직업장에서 현장훈련에 대한 평등한 접근기회를 도모하는 조치를 취하고, 비전통적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직업훈련 센터수를 늘리기 위해 기업에 장려인센티브를 증가시킨다.
- (g) 일하는 남성과 여성의 요구를 고려하여 고품질, 탄력적이고도 적절한 육아서비스와

같이 지원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74. 여성문제관련 지방, 국가, 지역 및 국제기업단체와 비정부기구 :

비공식부문을 포함하는 여성기업 및 사업체의 촉진 및 지원과 생산자원에서의 여성의 평등한 접근기회를 모든 차원에서 주장한다.

전략목표 F.4. 여성의 경제능력과 상업적 연대망을 강화한다.

향후활동

175. 정부:

- (a) 도시 및 농촌지역의 여성기업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단체, 비정부기구, 협동조합, 회전대부자금, 신용조합, 풀뿌리단체, 여성자조그룹 및 기타그룹을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한다.
- (b) 모든 경제 재구조 및 구조조정정책에 성관점을 통합하고 또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경제재구조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여성들과 비공식부문에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고안한다.
- (c) 비전통적 지원형태를 통하여 그리고 결사의 자유와, 집회의 권리를 인식함으로써 여성자조그룹과 근로자단체와 협동조합이 가능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정책을 채택한다.
- (d) 젊은 여성, 장애자 여성, 노인여성, 소수민족집단에 속하는 여성 등의 특수계층 여성의 자립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e) 여성연구 증진을 통해 특히 경제 과학 기술분야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성조사와 연구결과를 이용해 성평등을 증진한다.
- (f) 토착민여성의 상황과 발전을 증진하도록 그들의 전통적 지식을 고려하여 그들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한다.
- (g) 집에서 유급으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회보장 규정 및 노동법의 보호를 확대하거나 지속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한다.

(h) 여성과학자와 기술자에 의한 연구의 기여를 인식하고 장려한다.

(i) 여성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과 규정으로 차별하지 않도록 도모한다.

176. 재정중개인, 국가훈련기관, 신용조합, 비정부기구, 여성협회, 전문기구와 민간부문 등 적절하게:

- (a) 특히 젊은 여성들이 각 차원에서의 경제적 정책결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국가·지역·국제적차원에서 다양한 종류의 사업관련 및 재정관리, 기술 등에서의 훈련을 제공한다.
- (b) 경제의 수출부문에서의 그를 포함하는 여성기업들에게 유통 및 무역정보, 상품디자인 및 혁신, 기술이전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하는 사업서비스를 제공한다.
- (c)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주도적역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자간에 기술적 상업적 연대를 촉진하고 협력투자를 설립한다.
- (d) 주변부여성을 포함하여 특히 농촌 및 외딴 지역의 유통 및 재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생산 및 유통협동조합에의 여성의 참여를 강화한다.
- (e) 여성의 영세소규모기업, 신소규모기업, 협동기업, 확장시장과 기타 고용기회를 촉진, 강화하고, 적절한 곳에 농촌 및 도시지역에서 비공식부문에서 공식부문으로의 전이를 촉진한다.
- (f) 여성의 사업기업을 재정지원하기 위해서 자본을 투자하고 투자계획을 개발한다.
- (g) 시장경제에 진입과 관련하여 여성에게 기술적 지원, 조언적 서비스, 훈련 및 재훈련을 제공하도록 적절한 관심을 둔다.
- (h) 전통적 저축체계를 포함하는 대부연계망과 혁신적 투자를 지원한다.
- (i) 기업인여성에게, 보다 경험자인 여성이 숙련되지 못한 여성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위한 기회를 포함하는 연대망 조정을 제공한다.
- (j) 지역사회단체와 공공당국은 성공적인 소규모의 협동조합 모델을 유도하면서 여성기업가에게 공동대출제도를 확립할 것을 권장한다.

177. 초국가적이고 국내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

- (a) 비차별적인 기준에서 계약을 맺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고 메카니즘을 확립한다.
- (b) 남성과 평등한 기반에서 지도부, 의사결정과 경영에서 여성을 채용하고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c) 특히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내 노동, 환경, 소비자, 건강과 안전관련법을 준수한다.

전략목표 F.5. 직업 분리와 모든 형태의 고용차별을 철폐한다.

향후활동

178. 정부, 고용주, 피용자, 노동조합, 여성단체:

- (a) 동일임금과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ILO협약 100호와 같은 국제노동기준이 남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도모하는 자발적 행동규범을 권장하고, 법과 규정을 실시, 이행한다.
- (b) 성적이고 인종적인 희롱에 대한 법적보호를 포함하여, 훈련, 승진, 건강 및 안전 등의 고용과 고용조건에의 접근과 관련하여 혼인상의 지위 또는 가족지위상의 관련을 포함하여 성을 근거로 직접·간접적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비동의 하는 경우에 구제방법과 정의에의 접근을 포함하는 실시조치를 도입하고 법을 제정, 시행한다.
- (c) 특히 보다 나이든 여성근로자를 고려하여 고용과 승진, 고용급부와 사회보장의 확대에 있어서와 또한 차별적인 근로조건과 성희롱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작업장 정책을 개발하고 법을 제정·시행한다. 또한 그러한 법의 정기적인 검토와 모니터링을 위한 메카니즘이 개발되어야 한다.
- (d) 여성의 재생산역할 및 기능에 기초한 임신 및 수유의 책임으로 인한 여성에 대한 고용거부와 해고 등 고용주의 차별적 관행을 없앤다.
- (e) 특히 빈곤한 도시와 농촌의 젊은 여성, 자영업 및 구조조정에 의해 부정적 영향을 받은 여성들의 노동시장에의 입직 또는 재입직을 위한 고용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촉진한다.
- (f) 모든 부문에서의 여성의 고용, 취업, 승진,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특히 장애여성, 기타

취약여성집단 등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제도적인 차별을 표명하기 위한 적극적인 공공 및 사적부문의 고용균등 및 적극적 행동프로그램을 이행하고 모니터한다.

- (g) 고도의 숙련된 일 및 고위경영직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토록 하게 하고 또한 직업소개와 상담 등의 다른 기타방법으로 현장직업개발과 고위직 이동을 촉진케 하고, 또한 남녀에 의한 직업선택의 다양성을 촉진케 함으로써 직업 분리를 없앤다. 여성이 특히 과학, 기술에 있어서의 비전통적인 일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고 남성이 사회 부문에서 직업을 찾도록 고무한다.
- (h) 단체교섭권을 여성에 대한 임금불평등을 없애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권리로서 또한 중요한 체계로서 인식한다.
- (i) 여성노동조합 임원의 선출을 촉진하고 여성을 대표하도록 선출된 임원에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업보호와 신체적 안정이 주어지도록 도모한다.
- (j) 장애여성들이 일자리를 얻고 유지하기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의 접근을 도모하고, '장애자를 위한 기회균등에 관한 표준규정' 30/에 의거하여 모든 적절한 차원에서 교육 및 훈련에의 접근을 도모하고, 장애를 이유로 근거없이 직업을 상실한데 대한 법적보호를 보장받아야 하는 장애여성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을 가능한 범위까지 조정한다.
- (k) 남녀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증대하고, 국제노동 및 기준의 준수 등의 법률을 강화함으로써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성중립적 기준으로 직무평가구조를 장려한다.
- (l) 임금차별에 관련된 문제를 판결하기 위한 기제를 확립 그리고/또는 강화한다.
- (m) 인정된 국제기준에 반하는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없애기 위한 특정목표 일자를 설정하고 관련현행법의 완전한 시행을 도모하고, 적절한 곳에 건강, 교육 및 기타 사회 서비스 등을 통해서 일하는 아동 특히 불량아동의 보호를 도모하는 아동권리협약 및 ILO기준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을 제정한다.
- (n)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전략은 적용가능한 곳에 가정 또는 다른 가정의 소녀들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무급노동의 요구에 대해서 언급할 것을 도모한다.
- (o) 이들의 낮은 지위와 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교사, 보육 및 아동보육 등의 여성주도적

직업에서의 임금구조를 검토, 분석하고 적절한 곳에서는 재입안한다.

- (p) 해외교육 및 자격증을 보다 잘 인식하고 또한 언어훈련을 포함한 노동시장 훈련에의 통합된 접근방법을 채택함으로써 합법적인 이주여성(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결정된 난민이었던 여성포함)의 생산적인 취업을 촉진한다.

전략목표 F.6. 남성과 여성을 위한 일과 가족책임의 조화를 촉진한다.

향후활동

179. 정부:

- (a) 시간제, 임시, 계절 및 가내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의 적절한 보호와 사회보장 급부를 도모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일과 가족에 대한 책임을 조화시키는 노동조건에 기반한 경력개발을 장려한다.
- (b) 전일제 및 시간제노동을 남녀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고용, 근로조건, 사회보장의 접근에 있어서 비정형노동자를 위한 적절한 보호를 도모한다.
- (c) 법률, 인센티브 그리고/또는 격려금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이 직업보호를 받는 부모휴가를 취하고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적절한 법률, 인센티브 그리고/또는 격려를 통해서 가족책임에 대한 남녀의 평등한 분배를 추진하고 또한 취업모의 모유먹이기를 촉진한다.
- (d) 특히 아동과 노인보호와 관련하여 집에서의 노동에 대한 공유하는 가족책임에 대한 개념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에 기반한 노동분리를 강화하는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정책을 개발한다.
- (e)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직업적 노동을 촉진하는 기술의 개발 및 접근을 증진시키고, 생산과정에서 자립을 권장하여 수입을 창출하고 성의 정형화된 역할을 변화시키고 여성이 저임금 직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 (f) 교육 및 훈련, 임금고용, 가족책임, 자원활동 및 기타 사회적으로 유익한 형태의 노동, 휴식 및 레저 등에서 사람들이 시간을 분배하고 이익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성의 질과 탄력성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 국가우선과제 및 정책에 의거하여, 사회보

장법률과 세계 등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범위를 조사한다.

180. 정부, 사적부문 및 비정부기구, 노동조합 및 유엔 등 적절하게:

- (a) 여성과 남성이 그들의 일과 경력에 있어서 발전과 향상을 위한 전망을 희생시키지 않고 일시적 휴직을 얻고 양도가능한 고용 및 퇴직급부를 받고 또한 노동시간의 변경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정부부처와 고용주와 피용자 단체가 개입하는 적절한 조치를 채택한다.
- (b) 성평등, 가정내에서 비고정적 성역할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혁신적 미디어 캠페인과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제공한다. 직장 내 보육시설과 탄력적 노동체제와 같은 서비스와 시설을 제공한다.
- (c) 모든 작업장에서의 성적, 기타형태의 희롱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실행한다.

G. 권력 및 의사결정과 여성

181.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그의/그녀 국가의 정부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여성의 힘의 증진 및 자주성과 여성의 사회, 경제 및 정치적 지위의 향상은 투명성과 책임 있는 정부 및 행정부와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 모두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여성이 성취된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힘의 관계는 가장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매우 공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회계층에서 작용하고 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라는 목적을 성취하는 것은 더욱 정확하게 사회구성요소를 반영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이의 적절한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균형을 제공할 것이다.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평등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그것 없이는 평등척도의 진정한 통합이 거의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지렛대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활동에 있어서 여성의 평등한 참여는 여성향상의 전반적인 발전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성의 평등한 참여는 단순한 정의 혹은 민주주의를 위한 요구일뿐 아니라 여성의 관심사를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와 여성관점의 통합없이는 평등, 발전 그리고 평화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다.

182. 대부분 국가에서 널리 분포된 민주화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대부분의 정부직위 특

히 내각 및 기타 행정부에서 극히 참여가 저조하고 입법기구에서 정치력을 획득하거나 1995년까지 의사결정직위에 여성을 30%까지 되도록 하라는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현재 입법부의원의 10%만이 그리고 장관직위에는 더 낮은 비율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정말로 근본적인 정치, 경제 및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는 국가를 포함한 몇몇 국가는 입법부에 진출한 여성 수의 의미 있는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여성이 거의 모든 국가에서 유권자의 최소한 절반을 차지하고 또한 거의 모든 회원국에서 선거권과 공직을 가질 권리를 획득했더라도 여성은 여전히 공직후보자로서 대단히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많은 정당과 정부조직의 전통적인 근무형태는 계속해서 공적활동의 여성참여에 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여성은 차별적 태도와 관습, 가족 및 육아의 의무, 공직을 구하고 차지하는데 드는 높은 비용 등으로 인해 정치적 공직을 구하는 것이 좌절될 수도 있다. 정부 및 행정부의 정치 및 의사 결정직에 있는 여성은 여성의 성 특정적 관심사, 가치와 경험을 반영하고 표명하는 정치적 의제에 대한 새로운 항목을 설치하고 또한 주류 정치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면서 정치적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데 기여한다.

183. 여성은 공직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비공식 조직에서 상당한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매체를 통한 고정관념을 포함한 여성과 남성의 사회화와 부정적 고정관념은 정치적 의사결정이 남성영역으로 남아있게 하는 경향을 강화한다. 마찬가지로 예술, 문화, 스포츠, 매체, 교육, 종교와 법률분야의 의사 결정직에 여성의 낮은 참여는 많은 핵심 제도에 여성이 중요한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184. 정당, 사용자 단체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기구와 같이 권력의 전통적인 수단에서의 여성의 제한된 접근 때문에 여성은 대안적 조직 특히 비정부기구 부문을 통하여 권력에의 접근을 획득한다. 비정부기구와 풀뿌리조직을 통하여 여성은 그들의 이해와 관심을 분명히 말할 수 있었고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의제에 여성문제를 삽입하였다.

185. 공적활동무대에서의 불평등은 29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자주 차별적 태도 및 관행과 가족내의 남녀간의 불평등한 역할관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불평등한 역할관계에 기저한 가족내의 노동과 책임의 불평등한 분배 역시 보다 광범위한 공적장소에서의 의사결정 참여를 위해 요구되는 시간을 찾아내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여성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다. 남녀간의 이러한 책임을 좀더 동등하게 공유하는 것은 여성과 그들의 딸들을 위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가 인식되고 표명될 수 있게 하기 위해 공공정책, 실행과 경비를 구체화하고 고안하기 위한 그들의 기회를 확대한다. 지배적인 남성

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지방 지역사회 차원에서 의사결정의 비공식 네트워크와 형태는 정치, 경제 및 사회활동에 평등하게 참가하기 위한 여성의 능력을 제한한다.

186. 지방,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경제 및 정치적 의사결정자들 중 여성의 낮은 비율은 적극적 조치를 통해 언급될 필요가 있는 조직 및 태도상의 장애를 반영한다. 정부, 초국가 및 국가 시정당국, 대중매체, 은행, 학술 및 과학단체와 유엔체제내의 기구들을 포함한 지역 및 국제기구는 최고관리자, 정책입안가, 외교관, 협상가로서 여성의 재능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다.

187. 모든 차원에서 권력과 의사결정의 공평한 분배는 정책개발 및 사업수행에서 통계적 성 분석을 책임지고 있고 성의 관점을 주류화하는 정부와 기타 주체에게 의존하고 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평등은 여성의 힘의 증진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몇몇 국가에 있어서 적극적 조치는 지방 및 국가정부에서 33.3% 혹은 더 이상의 대표성으로 이끌었다.

188. 국가, 지역 및 국제통계기관은 경제 및 사회적 영역에서 남녀의 동등한 대우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제시하는가에 대하여 여전히 불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요한 의사결정분야에 있어서 기존의 데이터 베이스와 방법론의 사용이 불충분하다.

189. 모든 차원에서 권력과 의사결정의 분담에 있어서 남녀간의 불평등을 표명하는데 정부 및 기타 주체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성과 남성 각각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분석이 되도록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의 관점을 주류화하는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을 촉진시켜야 한다.

전략목표 G.1. 권력구조 및 의사결정에 여성의 평등한 접근과 완전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향후활동

190. 정부:

- (a) 공공행정개체 뿐 아니라 정부기구 및 위원회에 있어서 그리고 사법부에 있어서 성의 균형 목표를 수립하는데 전념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만약 필요하다면 적극적 조치를 통하여 모든 정부 및 공공행정부 직위에 여성과 남성의 동일 대표를 달성할 목적으로 여성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특정목표를 설정하고 조치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b) 남성과 같은 비율과 수준으로 선거 및 비선거 공직에 여성을 통합시키도록 정당을 고무하는 선거제도를 포함하는 조치를 취한다.
- (c) 정치활동 참가를 위한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권리와 정당 및 노동조합의 멤버십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에 대한 남녀의 평등한 권리를 보호하고 촉진시킨다.
- (d) 선출기구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에 대한 선거제도의 차별적 영향을 검토하고 적절한 곳에 이러한 제도의 조정 혹은 개혁을 고려한다.
- (e) 공적 및 사적부문의 모든 차원의 다양한 의사결정직에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자료의 정기적인 수집, 분석, 배포를 통하여 여성의 대표성에 관한 진전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1년 단위로 정부의 다양한 수준에 고용된 여성과 남성의 수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고; 여성과 남성이 충분한 공적 임명의 범위에 평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이 분야의 진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내에 기제를 설치한다.
- (f) 의사결정 및 의사결정 환경에 여성참여 및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비정부기구와 연구기관을 지원한다.
- (g)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에 더 많은 토착민 여성의 포함을 권장한다.
- (h) 정부재정지원 기구들이 그들의 조직에 여성의 숫자를 늘리고 여성의 직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차별적 정책과 관행을 채택하도록 적절한 곳에서 이를 권장하고 도모한다.
- (i) 남녀간의 분담된 일과 부모의 책임이 여성의 증대된 공공활동 참여를 촉진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가족과 직업활동을 조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j) 유엔기구, 전문기구, 유엔체제의 기타 자치기구에 특히 고위직에 선출 혹은 임명을 위해 지명된 국가후보자 명부에 성의 균형을 목표로 정한다.

191. 정당:

- (a) 여성의 참여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차별하는 모든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당 조직과 절차의 조사를 고려한다.
- (b) 여성이 모든 내부의 정책입안 조직과 임명 및 선거지명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발의를 개발하는 것을 고려한다.

- (c) 그들의 정치의제에 성문제를 통합하는 것과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토대위에서 정당의 리더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한다.

192. 정부, 국가기구, 사적부문, 정당,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 연구 및 학술기관, 소지역 및 지역기구, 비정부 및 국제기구:

- (a) 전략적 의사 결정직위에 임계질량의 여성지도자, 간부 및 관리자를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
- (b) 고위직결정직에 여성의 접근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를 적절하게 창설하거나 강화한다.
- (c) 자문 및 의사결정 기구에 채용 및 임명과 고위직 승진을 위한 기준을 검토하고 이 기준이 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여성을 차별하지 않도록 도모한다.
- (d) 모든 영역과 모든 차원에서 의사결정기구와 협상에서의 평등한 참여를 포함하여 남녀간의 직위에서 여성과 남성간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비정부기구, 노동조합과 사적 부문에 의한 노력을 장려한다.
- (e) 29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사회 및 가족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대중토론을 촉진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한다.
- (f) 모든 여성 특히 젊은 여성이 직무훈련을 포함한 관리자, 기업가, 기술자 및 지도자 훈련에 평등한 접근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용 및 직업개발 프로그램을 재조정한다.
- (g) 직업기획, 진로, 조력, 지도, 훈련 및 재훈련을 포함하는 모든 연령의 여성을 위한 직업향상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h) 유엔회의 및 이의 준비과정에 여성의 비정부기구 참여를 격려하고 지원한다.
- (i) 유엔 및 기타 국제포럼의 대표단 구성에서 성의 균형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원한다.

193. 유엔:

- (a) 유엔헌장 101조 3항에 부응하여 가능하다면 광범위한 지리적 토대 위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특히 전문직과 그 이상의 직위에 2000년까지 전반적인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기존의 고용정책 및 조치를 이행하고 새로운 고용정책 및 조치를 채택한다.

- (b) 유엔, 전문기구, 유엔체제의 기타 기구의 고위직 임명에 여성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기제를 개발한다.
- (c) 의사결정에 있어서 남녀에 관한 질적, 양적 자료를 계속 수집 및 배포하고 의사결정에 이러한 자료들의 차별적 영향을 계속 분석하고 2000년까지 관리 및 의사결정직의 50%를 여성이 차지하도록 한다는 유엔사무총장의 목표를 달성하는 진전과정을 계속 감시한다.

194. 여성단체, 비정부기구, 노동조합, 사회적 동반자, 생산자, 산업 및 전문단체:

- (a) 정보, 교육, 인지화 활동을 통한 여성들간의 단결을 구축하고 강화한다.
- (b) 모든 차원에서 여성들에게 정치, 경제 및 사회적 결정, 진전과정과 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옹호하고 선출된 대표에게 성의 관심사에 대한 그들의 공약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 (c) 자료보호법과 일치하여 여성과 그들의 자격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한다. 이 데이터 베이스는 고위 의사결정직 및 자문직위에 여성을 임명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정부, 지역 및 국제기구와 사기업, 정당 및 기타 관련기구에 배포하기 위한 것이다.

전략목표 G.2. 의사결정 및 리더십에 참여하기 위한 여성의 능력을 증진시킨다.

향후활동

195. 정부, 국가기구, 사적부문, 정당, 노동조합, 사용자, 소지역 및 지역기구, 비정부 및 국제기구와 교육기관:
- (a) 여성과 소녀, 특히 특별한 요구를 가진 사람들, 장애여성과 인종적 소수민족에 속하는 여성들이 그들의 자기 존중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그리고 그들을 의사결정직에 오르도록 고무하기 위한 리더십 및 자기존중 훈련을 제공한다.
 - (b) 의사결정직을 위한 명료한 기준을 가지고 선출기구들이 균형잡힌 성의 구성을 하도록 도모한다.

- (c) 경험이 없는 여성을 위한 자문제도를 창안하고 특히 정치 캠페인 뿐만 아니라 리더십 및 의사결정훈련, 대중연설과 자기표현 훈련을 포함한 훈련을 제공한다.
- (d) 비차별적 업무관계를 촉진하고 업무 및 관리형태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여성과 남성을 위한 성인지 훈련을 제공한다.
- (e) 선거과정, 정치활동 및 기타 리더십 분야에 여성이 참여하도록 고무하기 위한 기제와 훈련을 개발한다.

H. 여성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196. 여성향상을 위한 국가기구는 특히 여성향상을 촉진하는 정책지원을 고안, 이행추진, 실행, 감독, 평가, 옹호와 동원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회원국에 설립되어 왔다. 국가기구들은 형태가 다양하고 그들의 효과성은 고르지 못하며 몇몇 경우는 쇠퇴하였다. 국가정부조직에서 가끔 주변화된 이러한 장치는 불명확한 임무와 책임직원, 훈련, 자료와 충분한 자원의 부족, 국가정치지도력의 불충분한 지원으로 빈번하게 저해되고 있다.
197. 지역 및 국제차원에서 주류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발전의 통합적 부분으로서 여성향상과 발전 및 인권에 대한 주도권 향상을 진척시키기 위한 기제 및 기구들은 최고위층의 책임부족에서 나오는 유사한 문제에 봉착한다.
198. 계속되는 국제회의는 정책 및 프로그램 기획에 성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9. 여성향상과 관련된 지역기구는 여성지위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와 더불어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제한된 가용자원은 그들의 임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을 계속 방해한다.
200. 정책과 프로그램에 있어서 성을 토대로 한 분석을 수행하고 또한 여성과 남성에게 대한 정책의 차별적 효과를 다루기 위한 방법론이 많은 기구에서 개발되어 왔고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주 적용되지 않고 있거나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201. 여성향상을 위한 국가기구는 정부내의 중앙정책 조정단위이다. 이의 주요과제는 모든 정책 분야에 성평등 관점의 범 정부차원의 주류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기구의

효과적인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각료급 책임으로 두면서 가능한 정부최고위 차원에 위치;
- (b) 비정부기구 및 지역사회 단체의 참여를 목적으로 또한 풀뿌리 상층을 목적으로 분권화된 기획, 이행과 모니터링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제 혹은 방법;
- (c) 예산과 전문적 능력의 관점에서 충분한 자원;
- (d) 정부의 모든 정책개발에 영향을 줄 기회.

202. 여성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 문제를 표명하는데 있어서 정부 및 기타 주체는 결정이 취해지기 전에 여성과 남성 각각에 대한 영향이 고려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정책과 사업에 성의 관점을 주류화하는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을 촉진시켜야 한다.

전략목표 H.1. 국가기구와 기타 정부기구를 설립하거나 강화한다.

향후활동

203. 정부:

- (a) 여성향상을 위한 책임이 가능한 정부 최고위직에 부여되도록 도모한다. 많은 경우 이는 각료급이 될 수 있다.
- (b) 강력한 정치적 공약을 토대로 국가기구가 없는 곳에는 이를 설립하고 가능한 정부최고위수준에 여성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국가기구를 적절하게 강화한다; 명확하게 규정된 임무와 권한을 가져야 한다; 중요한 요소들은 정책에 영향을 행사하고 또한 법률을 입안하고 검토하기 위한 적절한 자원과 능력 및 자격이 될 것이다; 기타 사항들 중에는 정책분석을 수행해야 하고 이행에 대한 옹호, 커뮤니케이션, 조정 및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한다.
- (c) 성관점에서 자료를 고안하고 분석하는 직원훈련을 제공한다.
- (d) 초기단계에서 기구로 하여금 정부전반에 걸친 정책 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책개발에 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정부내의 과정을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를 수립한다.

- (e) 행동강령 이행을 고려하면서 적절하게 성관심을 주류화하기 위한 노력의 진전에 대해 정기적으로 입법기구에 보고한다.
- (f) 남녀평등을 위해 일하는 공적, 사적 및 자원 부문에 광범위하고 다양한 계층의 제도적 주체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장려하고 촉진시킨다.

전략목표 H.2. 법률, 공공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에 성 관점을 통합한다.

향후활동

204. 정부:

- (a) 정책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성과 남성 각각에 대한 정책결정의 영향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b) 여성이 발전의 직접적인 수혜자라는 것과 보수 및 무보수 모두를 포함한 발전에 대한 여성의 완전한 기여가 경제정책 및 기획에 고려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 및 소득정책의 영향을 평가하면서 그 이행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 (c) 여성의 권리행사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일소하기 위하여 남녀평등에 대한 국가전략 및 목표를 촉진시킨다.
- (d) 모든 법률 및 정책에 성관점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적절하게 입법기구의 멤버들과 함께 일한다.
- (e) 모든 정부부처에 성관점과 행동강령의 견지에서 정책과 프로그램을 검토하기 위한 임무를 부여한다. 이 임무의 이행책임을 가능한 최고위수준에 둔다. 이 임무를 수행하고 진행을 모니터링하고 관련기구와 네트워크를 하기 위한 부처간 조정 구조를 설립하고/혹은 강화한다.

205. 국가기구:

- (a) 모든 정책결정과정에서 성관점의 주류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녀평등에 대한 정부정책 입안과 이행을 용이하게 하고, 적절한 전략과 방법론을 개발하고 중앙정부 내에서의

조정과 협력을 촉진한다.

- (b) 관련정부기관, 여성연구센터, 학술 및 교육기관, 사적부문, 매체, 특히 여성단체 비정부기구 특히 여성단체 그리고 기타 모든 시민사회 주체와 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수립한다.
- (c) 법률개혁 그 중에서도 가족, 고용조건, 사회보장, 소득세, 평등한 교육기회, 법률정책 및 프로그램 개혁에 성관점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여성향상과 평등에 우호적인 태도와 문화의 인식을 촉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등과 관련한 것에 중점을 둔 활동을 착수한다.
- (d) 발전과정의 적극적인 행위자이자 수혜자로서 증가된 여성참여를 촉진한다. 이로써 만인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 (e) 여성향상을 다루는 국가, 지역 및 국제기구와 직접적인 연계를 수립한다.
- (f) 정부기구에 그들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의 관점을 통합시키기 위하여 훈련 및 자문 지원을 제공한다.

전략목표 H.3. 기획 및 평가를 위한 성별분리 자료와 정보를 생성하고 배포한다.

향후활동

206. 연구 및 문서기관과 협력하여 각자의 책임영역에서 국가, 지역 및 국제통계서비스와 관련 정부 및 유엔기구:

- (a) 개인관련 통계가 성 및 연령별로 수집, 편집, 분석, 제시되고 사회에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문제, 논제와 의문을 반영하도록 도모한다.
- (b) 정책 및 프로그램 기획과 이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령, 성, 부양자 수를 포함하는 사회경제 및 기타 관련 지표별로 분리된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 편집, 분석 및 제시한다.
- (c) 행동강령 목적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 분석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지표와 연구방법론을 개발 및 시험하는데 있어서 여성연구센터 및 조사단체를 포함한다.

- (d) 성통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분야의 통계업무의 조정, 모니터링 및 연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원을 지명 혹은 임명하고 다양한 주제 영역의 통계를 통합한 결과를 준비한다.
- (e) 비공식 부문의 참여를 포함하여 경제에 여성과 남성의 완전한 기여에 대한 자료 수집을 개선한다.
- (f) 모든 형태의 일과 고용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지식을 다음 사항에 의해 개발한다:
 - (i) 유엔체제의 국가계정에 이미 포함된 무보수 노동 즉 농업 특히 자급농업과 기타 비시장 생산활동 형태의 노동에 대한 자료수집을 개선한다.
 - (ii) 현재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실업 및 불완전 고용을 파소평가하는 측정을 개선한다.
 - (iii) 여성의 경제적 기여를 인정하고 남녀간의 보수 및 무보수 노동의 불평등한 분포를 가시화 한다는 관점에서 별도로 생산될 수 있는 그러나 주요국가 계정과는 일치하는 종속 혹은 기타공식 계정에 가능한 반영을 위하여 부양가족 돌보기와 음식 준비와 같은 국가계정과 관계없는 무보수 노동의 가치를 계량적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적절한 포름에서 개발한다.
- (g) 보수 및 무보수 노동에서 남녀간의 차이에 민감한 시간사용 통계를 위한 국제활동분류를 개발하고 성별분리 자료를 수집한다. 국가차원에서 국가적 강제를 조건으로 하여:
 - (i) 보수 혹은 기타 무보수 활동과 동시에 수행되는 활동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여 계량적 측면에서 무보수 노동을 측정하기 위한 정기 시간사용 연구를 이행한다.
 - (ii) 계량적 측면에서 국가계정과 관계가 없는 무보수 노동을 측정하고 종속 혹은 주요 국가계정과는 분리되어 있으나 그와 일치하는 기타공식계정에 이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방법을 개선하도록 한다.
- (h) 남녀간의 자원에의 접근을 포함하여 이들사이의 빈곤 측정에 대한 개념과 자료 수집 방법을 개선한다.
- (i) 주요통계체제를 강화하고 출판 및 조사에 성분석을 통합시키고; 사망율에 관한 자료

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고안과 자료수집 및 분석에 있어서 성 차이에 우선순위를 두고; 십대 어머니와 노인보호에 특별 우선권을 두고서 종합적인 성 및 재생산 보건서비스, 모성보호 및 가족계획에의 접근을 포함한 보건서비스에의 접근에 대한 자료수집을 개선한다.

- (j) 당사국의 행위자에 의한 폭력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성희롱, 강간, 근친상간 및 성적학대, 여성 및 소녀의 인신매매와 같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개선된 성분리 및 연령 특정적 자료를 개발한다.
- (k) 장애 여성과 남성의 자원에서의 접근을 포함하여 그들의 참여에 대한 개념과 자료수집 방법을 개선한다.

207. 정부:

- (a) 광범위한 비기술적 사용자에게 적합한 형태로 여성과 남성에 대한 개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성에 대한 통계 간행물의 정기 제작을 도모한다.
- (b) 각국의 통계 제작자와 사용자들이 공식 통계체제와 이 체제의 성문제 적용범위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도모하고 필요한 곳에 요구되는 개선 계획을 준비한다.
- (c) 공적 및 사적 부문 모두에서 고위직에 있는 여성 및 남성 수를 포함하여 사회에서의 권력 및 영향력의 공유에 대하여 연구단체, 노동조합, 사용자, 사적부문 및 비정부기구에 의한 양적 및 질적 연구의 발전을 개발하고 장려한다.
- (d) 정책입안과 프로그램 및 사업 수행에 있어 더 많은 성인지적 자료를 사용한다.

208. 유엔:

- (a) 모든 관련 유엔기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포함하여 여성의 인권과 관련시킬 수 있는 자료를 수집, 대조, 분석하는데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한 방법론 개발을 촉진시킨다.
- (b) 경제, 사회, 문화 및 정치 발전에 있어 여성관련 자료를 개선하기 위한 통계 방법의 보다 나은 개발을 촉진시킨다.
- (c) 5년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세계여성」(The World's Women) 신판을 준비하고 이를 광범위하게 배포한다.

(d) 성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하는 국가를 지원한다.

- (e) 국가 및 국제수준에서의 진전에 대한 유엔사무국 통계사무소와 국제여성연구훈련원(INSTRAW)의 관련보고서, 자료 및 간행물이 정기적이고 조정된 방식으로 여성지위 위원회에 전달되도록 도모한다.

209. 다자간 개발기구 및 양자간 공여자:

국가가 보수 및 무보수 노동을 포함하여 여성과 남성이 한 노동을 완전히 측정할 수 있고 적절한 곳에 무보수 노동을 종속 혹은 기타 공식계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원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 및 경제적 과도기에 있는 국가의 국가적 역량의 개발을 고무하고 지원한다.

I. 여성의 인권

210.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모든 인류의 생득권이며; 이의 보호와 증진은 정부의 첫번째 의무이다.

211. 세계인권회의는 유엔헌장, 기타인권관련 문서와 국제법에 부합하여 모든 인권과 만인을 위한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 준수 및 보호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회원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모든 회원국의 엄숙한 서약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 본질은 확실한 것이다.

212.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촉진과 보호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 특히 국제협력을 목표로 유엔의 우선적 목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목적과 원칙의 기틀 내에서 모든 인권의 촉진과 보호는 국제사회의 합법적인 관심사이다. 국제사회는 인권을 세계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방법으로, 동일한 관계로, 동일한 중요성으로 다루어야만 한다. 행동강령은 인권문제를 고려하는데 보편성, 객관성과 비선별성을 도모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213. 행동강령은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과 행동프로그램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인권-개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시민, 문화, 경제, 정치 및 사회적 인권-이 보편적인 것이고 분할할 수 없으며 상호의존적이고 상호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한다. 동회의는 여성과 여아의 인권이 보편적 인권의 양도할 수 없고 완전하고 분할할 수 없는 부분이

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여성 및 소녀에 의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충분하고 평등한 향유는 정부와 유엔에게 보다 중요한 것이며 여성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214.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권리는 유엔헌장의 전문에 명백하게 언급되어있다. 모든 주요국제 인권문서는 회원국이 차별할 수 없는 근거 중 하나로 성을 포함한다.

215. 정부는 모든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해야만 한다. 여성인권의 중요성의 인식은 유엔회원국의 3/4이 여성차별철폐협약 당사국이 되었다는 사실에 반영된다.

216. 세계인권회의는 여성의 인권이 생애주기를 통해 양도할 수 없고 전체적이며 나눌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재확인했다. 국제인구개발회의는 여성의 재생산권과 개발에 대한 권리를 재확인했다. 아동권리선언31/과 아동권리협약11/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을 근거로 하는 비차별의 원칙을 지지한다.

217. 권리의 실제와 이의 효과적 향유 사이의 차이는 이러한 권리를 촉진하고 보호하는데 대한 정부의 책임부족과 이에 대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똑같이 알려는데 대한 정부의 실패에서 기인하고 있다. 국가 및 국제차원에서 적절한 의지수단 기제의 결여와 양쪽 차원 모두에서의 부적절한 자원이 문제를 가중시킨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 많은 국가들이 여성의 권리를 행사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제를 설립하였다.

218.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유보라는 수단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고 동 협약의 목표 및 목적과 상반되는 그리고 국제협약법과 상반되는 유보가 없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여성의 인권이 국제인권문서에 의해 규정된 바와 같이 가족, 민사, 형사, 노동 및 상업법과 행정규칙 및 규정에 있어서의 국내 관습뿐 아니라 국내법에 완전하게 인식되고 효과적으로 보호, 적용, 이행, 시행되지 않는다면 여성의 인권은 이름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219.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기타 국제인권문서에 아직 당사국이 되지 않은 국가 또는 동협약의 목표 혹은 목적에 상반되는 유보가 남겨져 있는 국가 또는 국제규정 및 기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국가에 있어서 여성의 합법적인 평등은 아직 보장되지 않고 있다. 여성의 평등한 권리의 완전한 향유는 몇몇 국내법 및 국제법과 인권에 대한 국제문서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손상되고 있다. 지나치게 복잡한 행정절차, 사법제도에 저조한 여성진출과 결부되어 사법적 과정내에서의 의식 부족과 모든 여성 인권침해에 대한 부적절

한 모니터링, 기존의 권리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와 완고한 태도 및 관습이 여성의 사실상 불평등을 영속시킨다. 사실상의 불평등은 또한 특히 가족, 민사, 형사, 노동 및 상업 혹은 법전 또는 여성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행정규칙 및 규정의 시행부족에 의해 영속된다.

220. 모든 사람은 문화, 경제, 정치 및 사회개발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다. 많은 경우 여성과 소녀들은 경제 및 사회적 자원의 할당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 이는 그들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221. 모든 여성과 여아의 인권은 유엔인권활동의 주요 부분을 형성해야만 한다. 모든 여성과 소녀의 평등한 지위와 인권을 유엔체제 전반적인 활동의 주류로 통합시키기 위해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관련 단체와 기구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강력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것은 특히 여성지위위원회, 유엔고등인권판무관, 인권위원회의 특별 및 주제별 보고관, 개별전문가, 실무그룹과 차별방지 및 소수민족 보호에 관한 인권위원회 소위원회를 포함한 인권위원회, 지속가능한 개발위원회, 사회개발위원회, 범죄방지 및 형사재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및 기타 인권협약기구와 전문기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유엔체제의 개체간의 증진된 협력과 조정을 필요로 한다. 유엔인권체제를 강화하고 합리화하고 능률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권한과 임무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할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이 체제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이 또한 요구된다.

222. 만약 만인을 위한 인권의 완전한 실현이라는 목표가 달성된다면 국제인권문서에는 성 분석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여성차별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본질을 더욱 명백하게 고려하기 위한 방법이 적용되어야만 한다.

223. 국제인구개발회의의 행동프로그램14/과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프로그램2/을 명심하면서 그들 각각의 보고서에 서술된 바와 같이 제4차 세계여성회의는 재생산권이 모든 커플과 개인이 자녀수, 터울과 시기를 자유롭게 책임있게 결정하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한 정보 및 수단을 갖기 위한 그들의 기본적 권리와 성 및 재생산 보건의 최고 기준을 달성할 권리에 대한 인식에 달려있음을 재확인한다.

224.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여성에 의한 향유를 침해하고 약화시키거나 무의미하게 한다. 여성폭력철폐선언과 특별보고관의 업무를 고려하면서 문화적 편견, 인종차별주의 및 인종차별, 외세침오, 포르노그래피, 인종청소, 무력분쟁, 외세점령, 종교적 및 반종교적 극단주의와 테러행위로 인해 생기는 여성에 대한 폭력뿐 아니라 구타와 기타 가정

폭력, 성적학대, 성적노예화 및 착취, 여성 및 아동의 국제인신매매, 강제매춘 및 성희롱과 같은 성에 근거한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와 상반되며 퇴치해야만 하고 철폐되어야만 한다.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전통적, 관례적 혹은 현대적 관습의 어떠한 해로운 부분이라도 금지되어야만 하고 철폐되어야만 한다. 정부는 회원국 혹은 개인에 의해 잘못이 저질러졌거나 묵인되었던 간에 사적 및 공적활동에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퇴치하고 철폐하기 위한 긴급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

225.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인종, 언어, 민족, 문화, 종교, 장애 혹은 사회경제적 계급과 같은 요소들 때문에 또는 원주민, 여성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자, 난민여성 혹은 피난민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향유하는데 추가의 장벽에 직면한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권리 침해의 경우 정보 및 자원 기제에의 접근을 확보하는데 직면하는 장애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 인권의 지식 및 인식의 전반적인 부족으로 인해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거나 주변화될 수 있다.

226. 피난민여성,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기타 난민여성과 국내난민 여성의 탈출 원인이 되는 요인들은 남성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들과는 다를 수도 있다. 이들 여성들은 그들의 탈출 동안과 그 이후로도 그들의 인권이 남용되기 쉬운 처지에 계속 놓이게 된다.

227. 여성들은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법률제도를 점차적으로 더 사용하는 반면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권리행사에 대한 의식부족은 여성들의 권리를 충분히 향유하고 평등을 달성하는데 여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많은 국가에서의 경험은 여성이 그들의 교육 혹은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과 관계없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권한이 위임될 수도 그리고 동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률문제 프로그램과 미디어 전략은 여성들이 그들의 권리와 그들 삶의 기타 측면 사이의 연계를 이해하는 것을 돕는데 그리고 여성이 그러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돕기 위해 취해질 수 있는 비용 효과적 주도권을 설명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인권교육규정은 여성 인권의 이해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며 여성권리 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의지수단기제의 지식을 포함한다. 모든 개인 특히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여성들은 그들 권리의 완전한 이해와 그들 권리 침해에 대한 법률 수단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228. 인권변호와 관련된 여성은 보호되어야만 한다. 정부는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해 개인 혹은 조직에서 평화적으로 일하는 여성에 의한 세계인권선언,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 사회 및 문화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설정된 모든 권리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비정부기구, 여성단체와 여권주의자 그룹은 네트워킹, 옹호 및 풀뿌리 활동을 통한 여성인권증진에 있어서 촉매역할을 해왔으며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정보에의 접근과 격려, 지원을 필요로 한다.

229. 인권의 향유를 역설하는데 있어 정부와 기타 주체는 결정이 취해지기 전에 남녀 각각에 대한 영향분석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관점을 주류화하는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을 증진시킨다.

전략목표 1.1. 모든 인권 문서 특히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통하여 여성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보호한다.

향후활동

230. 정부:

- (a) 국제 및 지역 인권협약에 비준 혹은 가입을 향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b)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세계적 비준이 2000년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동 협약을 비준, 동의하고 이의 이행을 도모한다.
- (c)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어떠한 유보의 범위도 제한하며; 그런 어떠한 유보도 가능한 정확히 그리고 엄밀히 표명하고; 동 협약의 목적 및 목표와 상반되거나 그 밖의 국제협약법과 상반되는 유보는 없도록 도모하고 유보사항을 철회할 목적으로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목적 및 목표에 상반되거나 그 밖의 국제협약법과 상반되는 유보를 철회한다.
- (d) 세계인권회의에서 권고된 바와 같이 여성의 인권을 포함한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규명하는 국가행동계획의 작성을 고려한다.
- (e) 세계인권회의에서 권고된 바와 같이 여성의 인권을 포함한 이러한 권리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국가기구를 창설하거나 강화한다.
- (f) 여성들사이에서 그들의 인권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g) 만약 그들이 회원 당사국이라면 그들이 동 협약에 명백히 제시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국내법, 정책, 관습 및 절차를 검토하므로써 동 협약을 이행하

고; 모든 회원국은 그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 인권의무를 다하도록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국내법, 정책, 관습과 절차의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 (h) 여성인권의 분석 및 검토를 도모하기 위하여 ILO 협약을 포함한 모든 기타 인권협약 및 문서하의 보고에서 성측면을 포함한다.
- (i)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의해 수립된 지침을 완전히 따르면서 그리고 적절한 곳에 비정부기구를 개입시키거나 보고서 준비에서 그들의 기여를 고려하면서 동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일정에 대하여 보고한다.
- (j) 여성차별철폐협약 20조 1항32/과 관련하여 1995년 5월 22일 협약 당사국에 의해 채택된 개정의 광범위한 비준을 통하여 적절한 회의의 시기를 고려하므로써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방법을 증진시키므로써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k) 청원절차권에 따라 가능한 빨리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임의의정서 초안을 구체화할 목적으로 여성지위위원회가 주도하는 일련의 활동을 지지한다. 임의의정서의 실행가능성과 관련된 상기의 관점들을 포함한 임의의정서에 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고려하면서 청원권에 대한 구속력을 가능한 조속히 다루기 시작할 수도 있다.
- (l) 1995년 말 이전에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비준 혹은 가입을 달성하기 위한 그리고 소녀와 소년의 동등한 권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는 긴급 조치를 취하고; 2000년까지 아동권리협약이행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직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들은 당사국이 되도록 촉구한다.
- (m) 유엔체제의 맥락에서 여영아살해, 해로운 아동노동, 아동 및 그들의 기관판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래피와 기타 형태의 성적학대 방지 및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국제 조치를 채택하는데 목적을 둔 노력을 지지함으로써 아동의 민감한 문제를 표명하고, 아동권리협약의 임의의정서 초안에 기여하는 것을 고려한다.
- (n) 성착취, 프로노그래피, 매춘 및 섹스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 조직적이고 또한 기타 형태의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를 국제협력을 통하여 대항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 인권문서의 이행을 강화하고, 희생자에 대한 법률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여성 및 아동의 조직적 착취에 책임있는 자들을 기소하고 처벌하기

위한 국제협력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 (o) 토착민 여성의 인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도모할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세계 토착민 국제 10년내에 총회에서 토착민 권리선언 채택을 고려하고 토착민의 조직참여 규정에 의거하여 선언 초안을 작성하는 실무그룹에 토착민 여성의 참여를 권장한다.
231. 임무 및 과제의 불필요한 중복을 회피할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기구, 기제와 절차의 보다 나은 조정을 통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다 증진하면서 유엔체제의 관련기관, 기구와 유엔고등인권판무관 및 유엔고등난민판무관과 유엔체제의 모든 인권기구:
- (a) 개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모든 인권-시민, 문화, 경제, 정치 및 사회적 권리-의 존중과 보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그들 각자의 임무를 실행함에 있어서 여성의 인권에 대해 완전하고 동등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다.
 - (b) 여성인권의 완전한 통합과 주류화를 위한 세계인권회의 권고의 이행을 도모한다.
 - (c) 자문서비스, 기술지원, 보고방법론, 성영향평가, 조정, 공공정보 및 인권교육과 관련한 활동을 포함한 유엔체제를 통하여 여성인권 주류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 프로그램 이행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 (d) 발전과정의 주체이자 수혜자로서 여성의 통합과 완전한 참여를 도모하고 환경 및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18/에 명시된 지속가능하고 균등한 개발을 향한 세계여성행동을 위해 수립된 목적을 역설한다.
 - (e) 그들의 활동에 성에 기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그들의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에 결과를 통합한다.
 - (f)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인권기구 및 기제의 활동의 협력 및 조정을 도모한다.
 - (g)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포함한 여성지위위원회, 인권위원회, 사회개발위원회, 지속가능개발위원회, 범죄방지 및 형사재판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포함한 유엔인권협약 모니터링 기구와 유엔여성발전기금(UNIFEM), 국제여성연구훈련원(INSTRAW),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과 여성의 인권증진에 있어서 그들의 임무내에서 활동하는 기타 유엔체제의 기구간의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고 여성향상국과 인권센터 간의 협력을 향상시킨다.

- (h) 특히 집단학살, 인종청소, 전쟁상황 및 피난민의 유동 및 기타이동에서 여성의 조직적 강간 형태의 인권의 엄청난 침해와 피난민, 난민 및 귀환여성들이 특정인권의 남용에 처해진다는 사실과의 밀접한 연계를 고려하고 유엔고등인권판무관 및 유엔고등난민판무관과 그들 각각의 임무내에서 기타 관련기구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수립한다.
- (i) 인권자문서비스 프로그램 맥락내에 국가행동 프로그램과 인권 및 국가기관에 성관점의 통합을 권장한다.
- (j) 모든 유엔인사 및 직원 특히 인권 및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여성인권 훈련을 제공하고 그들이 여성의 인권침해를 인식하고 다루고 또한 그들의 업무에 성측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여성인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 (k) 유엔인권교육 10년(1995~2004) 행동계획의 이행을 검토할 때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결과를 고려한다.

전략목표 1.2. 법률 및 관습하의 평등과 비차별을 도모한다.

향후활동

232. 정부:

- (a)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기타 견해, 민족적 혹은 사회적 기원, 재산, 태생 혹은 기타 신분에 관한 어떠한 종류의 구별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여성과 남성에 의한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촉진 및 보호하는데 우선권을 둔다.
- (b) 모든 연령의 모든 여성과 소녀에게 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헌법상 보장을 제공하고/혹은 적절한 법률을 제정한다.
- (c) 법률에 남성과 여성의 평등원칙을 구현하고 법률 및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이 원칙의 실제적인 실현을 도모한다.
- (d) 국내법률에 의하여 모든 관련 국제인권 문서의 원칙 및 절차의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 민사, 형사, 노동 및 상법 분야의 관습법 및 법적 실행을 포함하여 국내법을 고찰하고, 성에 근거한 차별이 여전히 남아 있는 어떠한 법률도 폐지하고 정의의 행정에 있어서 성편견을 제거한다.

- (e) 개인 특히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위, 자원과 정부에의 접근이 주어진 인권위원회 혹은 민원조사관과 같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국가 인권기구에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강화하고 권장하며 이러한 기구들이 여성인권 침해를 포함한 문제에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도모한다.
- (f) 위의 94항에서 96항에 언급된 권리를 포함하여 여성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도모하기 위한 행동을 취한다.
- (g) 해로운 전통적 혹은 습관적 관습, 문화적 편견과 극단주의로 인한 인권침해인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항하고 철폐하기 위한 긴급 행동을 취한다.
- (h) 여성생식기절단이 존재하는 곳에 이를 금지하고 그러한 관행을 철폐하기 위하여 비정부 및 지역사회 단체와 종교기관간의 노력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보낸다.
- (i) 공무원 특히 경찰 및 군사요원, 교정공무원, 보건 및 의료요원, 이주 및 난민문제를 다루는 이들을 포함하는 사회사업가, 모든 차원의 교육체제에 있는 교사들에게 성인지적 인권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재판관과 국회의원들에게도 그들의 공공책임 수행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교육 및 훈련을 가능하게 한다.
- (j) 노동조합과 기타 전문 및 사회단체의 회원이 되기 위하여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증진시킨다.
- (k) 공무원 누구라도 이들에 의해 행해진 여성인권 침해를 조사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제를 설립하고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처벌 법적조치를 취한다.
- (l) 형법과 절차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관계에 상관없이 여성을 겨냥하거나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호와 기소를 보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여성에 대한 어떠한 차별이라도 철폐하기 위한 형법과 절차를 검토하고 수정하고, 또한 여성피고인, 희생자와/혹은 증인들이 범죄 조사 및 기소에서 다시 희생되거나 차별 받지 않도록 도모한다.
- (m) 여성이 그중에서도 특히 경찰공무원, 교도소 및 유치장공무원뿐만 아니라 판사, 변호사, 기타 법원 공무원이 되는데 남성과 같은 권리를 갖도록 도모한다.
- (n) 권리침해 배상을 추구하는 비혜택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의 또는 즉시 이용가능하고 무료의 혹은 가능한 대안적 행정기제와 법률원조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혹은 이

를 수립한다.

- (o) 모든 인권—개발에의 권리를 포함한 시민, 문화, 경제, 정치 및 사회적 권리—의 보호 및 증진분야에서 모든 여성과 비정부기구 및 그들의 회원들이 인권선언과 모든 기타 인권문서와 국내법 보호에 따라 모든 인권과 자유를 완전하게 향유하도록 도모한다.
- (p)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의 정보 및 서비스에의 접근을 포함하여 사회 모든 측면에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제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장애여성 및 소녀의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비차별과 동등한 향유를 도모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장애자 기회 균등화에 관한 기준규칙30/에 수록된 권고의 이행을 강화하고 장려한다.

전략목표 1.3. 법률문해를 달성한다.

향후활동

233. 정부 및 비정부기구,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 적절하게:

- (a) 장애인과 낮은 수준의 문해자들에게 가능한 곳에는 지방 및 토착어로 그리고 적절한 대안적 형태로 번역하고, 관련유엔회의 및 정상회의 결과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국가보고서 뿐만 아니라 인권선언, 민법상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국제협약 33/, 아동권리협약, 고문 및 기타 잔혹, 비인간적 또는 모멸적 대우 또는 처벌에 대한 협약, 개발권리에 관한 선언34/, 여성폭력철폐선언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의 동등한 지위와 인권과 관련한 법률과 정보를 홍보하고 배포한다.
- (b) 이러한 정보를 장애인과 낮은 수준의 문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그리고 적절한 대안적 형태로 홍보하고 배포한다.
- (c) 여성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사법제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침을 포함하여 국가법률과 여성에 대한 이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배포한다.
- (d) 인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군인, 경찰 및 기타 법집행요원, 재판관, 법률 및 보건전문가들과 같은 그룹에게 그들의 공공정보 및 인권교육활동과 성인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에 국제 및 지역 문서와 기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 (e) 여성의 인권이 침해된 때 배상노력을 위한 국가, 지역 및 국제적 기제의 존재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충분히 홍보한다.
- (f) 인권교육에 여성이 그들의 인권을 알기 위한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 및 지역여성단체, 관련 비정부기구, 교육가와 미디어를 고무하고 조정하여 이들과 협력한다.
- (g) 모든 교육차원의 학교교육과정에 여성의 인권 및 법률적 권리에 대한 교육을 증진시키고 가족 내에서 여성의 권리를 포함한 공적 및 사적 생활에 있어서 남녀평등에 대한 그리고 국내 및 국제법하의 관련 인권문서에 대한 공공 캠페인을 그 나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로 수행한다.
- (h) 국가안보와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임명된 군대를 포함한 군대요원에게 그들이 근무와 비번시의 모든 시간에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또한 무력분쟁 상황에서 여성과 아동보호에 대한 규칙과 인권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두면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기반에서 모든 국가에서 인권 및 국제인도주의법의 교육을 증진한다.
- (i) 피난민 및 난민여성, 이주여성 및 여성이주노동자들이 그들의 인권과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존수단 기제를 알도록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J. 여성과 미디어

234. 지난 10년간, 정보기술의 발전은 국경을 초월하는 세계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촉진하였으며 공공정책, 개인의 태도 및 행동 특히 아동과 초기성인들의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처에 미디어가 여성발전에 훨씬 더 크게 기여하도록 잠재력이 존재한다.

235. 많은 여성이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의사결정수준의 직위에 이르거나 미디어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적인 위원회에 근무하는 여성은 거의 없다. 미디어의 성인지 부족은 공공 및 사적인 지역, 국가 및 국제적 미디어기관들에서 발견될 수 있는 성고정관념의 제거 실패에 의해 입증된다.

236.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전자·인쇄·시청각—의 부정적이고 비하적인 여성상에 대한 지속적인 표출은 변화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의 인쇄 및 전자 미디어는 변화하는 세계 속의 여성의 다양한 삶과 사회기여에 대한 균형있는 묘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게다가 폭력

적이고 비하적인 혹은 외설적인 미디어 작품들 역시 여성과 그들의 사회참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는 프로그램편성도 동등하게 제한할 수 있다. 소비자중심주의에 대한 전세계적인 추세는 광고 및 광고방송이 종종 여성을 소비자로서 첫번째로 묘사하거나 온당치않게 소녀 및 모든 연령의 여성을 목표 대상으로 하는 풍조를 만들어 내었다.

237. 여성은 자신의 기술, 지식 및 정보기술에의 접근을 향상시킴으로서 힘이 증진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에 대항하고 점점 증가하는 주요산업의 위력 남용 사례에 도전하도록 여성의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미디어의 자율규제장치가 창설 및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성편견적인 프로그램 편성을 배제하도록 개발된 접근법도 창설 및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여성,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여성들은 확장되고 있는 전자 정보 고속도로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없으므로 그들에게 대안적인 정보자료를 제공해 줄 네트워크를 설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성은 신기술의 성장과 영향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하여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의사결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238. 미디어의 동원 문제를 표명함에 있어서 정부와 기타 주체자들은 정책 및 프로그램에 성관점을 주류화하는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을 촉진해야 한다.

전략목표 J.1.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의 신기술에서와 그것을 통한 표현 및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와 접근을 증진한다.

향후활동

239. 정부:

- (a) 모든 지역 및 차원의 미디어에 여성의 동등한 접근을 촉진 및 도모하도록 여성의 교육, 훈련 및 고용을 지원한다.
- (b) 관심과 행동을 필요로 하는 분야를 규정짓고 성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현존 미디어 정책을 검토하도록 모든 방면의 여성과 미디어 연구를 지원한다.
- (c) 관리, 프로그램편성, 교육, 훈련 및 연구를 포함하여 미디어에 여성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를 촉진한다.

(d) 사적 및 국가 혹은 공공미디어에 연계되어 있는 기구들을 포함하여 모든 자문, 경영, 관리 혹은 모니터링 기구에서의 여성과 남성 임명에 있어서 성균형을 목표로 한다.

(e) 이들 기구가 표현의 자유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프로그램의 수를 확대하고 여성의 요구 및 관심사가 적절히 표명된 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권고한다.

(f) 국제차원을 포함하는 정보확산 및 견해 교류의 수단으로서 전자 네트워크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의 신기술을 포함한 여성의 미디어 네트워크를 격려 및 인정하고, 모든 미디어 작업에 적극적인 여성그룹과 그것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의 시스템을 지원한다.

(g) 토착민의 다양한 문화형태에 관한 정보를 확산하고 국내법의 기틀내에서 이점에 관한 사회 및 교육적 문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 미디어에서 프로그램의 창조적인 이용을 위한 수단 혹은 동기부여를 권고 및 제공한다.

(h) 국내법의 기틀내에서 미디어의 자유 및 그것에 수반되는 보호를 보장하며 표현의 자유에 따라 개발 및 사회문제에 미디어를 긍정적으로 포함하도록 권고한다.

240. 국가와 국제미디어 시스템:

미디어와 국제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의한 균형있고 다양한 여성묘사를 촉진하고 제작 및 의사결정에 여성과 남성의 참여증대를 촉진하는 자발적기제를 포함한 관리기제를 표현의 자유에 따라 개발한다.

241. 적절하게 정부 혹은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기구:

(a) 실험적인 노력에 대한 재정지원을 포함하여 매스미디어를 위한 정보를 산출하기 위하여 여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권고하고 공적 혹은 사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인공두뇌우주 및 인공위성의 신기술을 이용하도록 권고한다.

(b) 민주적인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신기술을 포함하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이용을 권고한다.

(c) 여성 미디어전문가들의 인명록 편찬을 촉진한다.

(d) 미디어의 균형있고 비정형화된 여성묘사를 촉진하도록 전문적인 지침 및 행동규범 혹은 기타 적절한 자율규제장치의 개발에 여성의 참여를 권고한다.

242. 비정부 기구와 미디어 전문기관:

- (a) 미디어를 모니터할 수 있고 여성의 요구 및 관심사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도모하기 위하여 미디어와 협의할 수 있는 미디어 감시단의 설치를 권고한다.
- (b) 국제차원을 포함하여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의 정보기술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여성을 훈련한다.
- (c) 미디어에서 여성의 특별한 요구를 인식하도록 비정부기구, 여성단체 및 전문미디어기관들간의 네트워크를 창설하고 이들을 위한 정보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그 중에서도 여성의 인권과 남녀평등을 증진하도록 이 기관들간의 남·남 및 남·북 대화를 지원하여 특히 국제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에의 여성참여 확대를 촉진한다.
- (d) 그들의 문화를 반영하는 이야기, 드라마, 시 및 노래와 같은 전통적이고, 토착적이며 기타종족 형태인 미디어를 적절한 언어로 개발하도록 미디어 산업 및 교육과 미디어 훈련기관을 권고하며, 개발 및 사회문제에 관한 정보를 확산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다.

전략목표 J.2. 미디어의 균형있고 비정형화된 여성묘사를 촉진한다.

향후활동

243. 표현의 자유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정부와 국제기구:

- (a) 여성 및 소녀와 그들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균형있는 묘사를 촉진하는데 목표를 둔 정보,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의 전략에 대한 연구 및 이행을 촉진한다.
- (b) 행동강령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미디어와 광고업체를 권고한다.
- (c) 미디어에서 비정형화되고 균형있고 다양한 여성상의 창출 및 이용을 격려하도록 미디어 소유주와 경영자를 포함하여 미디어 전문가들을 위한 성인지 훈련을 권고한다.
- (d) 여성을 창조적인 인간, 주요활동자, 발전과정의 공여자 및 수혜자로 묘사하기 보다는 열등한 존재로 묘사하거나 성적대상 및 상품으로서 그들을 착취하는 것을 삼가하

도록 미디어를 권고한다.

- (e) 미디어에 나타나는 성차별주의자의 고정관념은 성차별적이고 더없이 비하적이며 공격적이라는 개념을 촉진한다.
- (f) 외설물과 미디어의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의 표출을 금지하는 적절한 입법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그러한 조치를 제도화 한다.

244. 매스미디어와 광고기관:

- (a) 비정형화된 여성상의 묘사를 촉진하도록 전문적인 지침, 행동규범 및 기타 자율규제 방식을 표현의 자유에 따라 개발한다.
- (b) 광고를 포함하여 미디어에서의 여성에 관한 폭력, 비하, 혹은 외설적인 자료를 표명하는 전문적인 지침 과 행동규범을 표현의 자유에 따라 마련한다.
- (c) 지역사회, 소비자 및 시민사회의 모든 관심사에 관한 성관점을 개발한다.
- (d) 모든 수준의 미디어의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한다.

245.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기구와 적절하게 협력하여 미디어, 비정부기구와 사적부문:

- (a) 가족내의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 및 비정형화된 성역할을 강조하고 가정폭력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아동학대와 여성에 대한 모든형태의 폭력을 제거하는데 목적을 둔 정보를 홍보하는 미디어 캠페인을 통하여 가족책임에 대한 동등한 분담을 촉진한다.
- (b) 특별히 젊은여성에게 역할모델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지도자들 특히 어머니로서, 전문가로서, 관리자로서 및 기업인으로서 단지 균형있는 일과 가족책임에 대한 그들의 경험에 한정되지 않은것을 포함하여 그들의 지도자 직위에 많은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져온 지도자로서 여성지도자들에 관한 미디어자료를 발간 및/혹은 홍보한다.
- (c) 여성의 인권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고 인식을 증진하도록 공적 및 사적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광범위한 캠페인을 촉진한다.
- (d) 여성과 그들의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도록 적절하게 대안적 미디어의 개발과 모든 수단의 커뮤니케이션 이용을 지원하고 또한 재정지원을 한다.
- (e) 미디어프로그램에 관해서 성분석을 적용하도록 접근법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한다.

K. 여성과 환경

246. 인간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의 증앙에 있다. 그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에 대한 권리가 있다. 여성은 유엔환경개발회의와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 인정되고 의제 21에 반영된 것과 같이 지속가능하고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소비 및 생산형태와 천연자원 관리에 대한 접근법의 개발에서 담당해야 할 필수적인 역할이 있다. 자원고갈, 자연체계의 파괴와 오염물질의 위험에 대한 인식은 지난 10년간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들 악화상황은 손상되기 쉬운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사회, 특히 여성을 생산활동으로 부터 밀어내고 있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해서는 점점 증대하는 위협이다. 빈곤과 환경파괴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빈곤은 특정한 종류의 환경적인 곤란을 초래하지만, 계속되는 전지구적인 환경파괴의 주요한 원인은 지속불가능한 소비와 생산형태이며 특히 산업화된 국가에서 그러함바 그것은 빈곤과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관심사이다. 지구온난화의 결과로 상승하고 있는 해수면은 섬국가 및 해안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을 일으킨다. CFC냉매(프레온가스), 하론가스 및 브롬화메탄(이것으로부터 플라스틱제품과 거품이 만들어짐)의 생산품과 같은 오존고갈물질의 사용은 대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과도한 수준의 해로운 자외선이 지구의 표면에 도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보다 높은 비율의 피부암, 눈의 손상 및 약해진 면역체계와 같이 인류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것은 또한 농작물 및 해양생활에 대한 해로움을 포함하여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47. 모든 국가와 국민은 전세계 대다수 인류의 생활수준의 불균형을 감소시키고 요구에 더욱 잘 부응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서 빈곤을 퇴치하는 중대한 과업에 협력해야 한다. 허리케인, 타이푼 및 기타 자연재해와 더불어 자원파괴, 폭력, 전쟁과 관련된 이동 및 기타의 영향, 무력 및 기타의 분쟁, 핵무기의 사용 및 실험과 외국인 점령 또한 환경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천연자원의 악화는 무보수의 노동을 훨씬 증가시키면서 지역사회, 특히 여성을 소득산출활동으로부터 밀어내고 있다. 도시와 농촌지역의 환경파괴는 보건, 복지 및 대다수 인구의 삶의 질, 특히 소녀 및 모든 연령의 여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특별한 배려와 인식이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의 역할 및 특별한 상황과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에게 주어져야 하며, 그곳에서의 훈련, 토지, 천연 및 생산자원, 신용거래, 개발프로그램 및 협력조직에 대한 접근은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대하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가정과 직장에서의 환경적인 위협은 다양한 화학제품의 중독성 영향에 대한 여성의 서로다른 민감성으로 인해 여성의 건강에 불균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성의 건강에 대한 이러한 위협은 오염산업시설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저소득 지역은 물론 도시지역에서 특별히 높다.

248. 여성은 천연자원의 관리와 이용을 통하여 자신의 가족과 공동체에 생계를 제공한다. 여성은 소비자 및 생산자, 가족관리자 및 교육자로서 현재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의제 21의 24장19/에 포함되어있는 것과 같이 세대내에서와 세대간에서 환경적인 지속가능성과 성평등 및 정의의 통합하는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공약을 표명하였다.

249. 여성은 천연자원과 환경의 관리, 보존, 보호 및 복원에서 모든수준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주로 참여하지 못하며 적절한 천연자원 관리의 옹호와 모니터링에서의 그들의 경험과 기술은 관리차원의 교육기관 및 환경관련기구에서는 물론 정책결정 및 의사결정기구에서도 아주 종종 주변화 되어 있다. 여성은 토지사용계획가, 농업전문가, 삼림전문가, 해양과학자 및 환경법률가와 같이 정책결정역량을 가진 전문적인 천연자원관리자로 거의 훈련받지 못한다. 여성이 전문적인 천연자원관리자로 훈련을 받은 곳에서조차도 그들은 종종 국가, 지역 및 국제 수준의 정책결정 역량을 가진 공식기관에의 참여가 저조하다. 여성은 종종 재정관리와 그들의 의사결정이 아주 중대하게 환경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체에서 동등한 참여자가 되지 못한다. 더 나아가 모든 수준의 환경문제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비정부기구들의 최근의 빠른성장과 가시화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를 다루는 여성 비정부기구와 국가기관 사이의 동격화에는 제도적인 결점이 있다.

250. 여성은 낭비와 지나친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윤리증진, 자원사용감소와 자원재사용 및 재활용에 있어서 종종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거나 혹은 술선수범을 하고 있다. 여성은 지속가능한 소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특별히 유력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일반대중 및 청소년들의 환경보호캠페인을 포함하여 환경관리에 대한 여성의 기여는 환경문제에 관한 분산화된 행동이 가장 필요하고 또한 결정적인 지역차원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여성, 특히 토착민 여성은 생태학적인 연계와 손상되기 쉬운 생태계 관리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있다. 대다수의 지역사회에서 여성은 해산식품의 생산을 포함하여 생존물품을 위해 주요 노동력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식품 및 영양의 공급, 생계 및 비공식부문의 향상과 환경보존에 대한 여성의 역할은 중대하다. 어떤 지역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가장 고정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그것은 가정 및 지역사회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자원활달을 도모하도록 여성을 남겨두고 남성은 종종 먼지역에서 일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251. 건전한 환경관리에 필요한 전략적인 조치는 전체적이고, 다학문적이며 부문상호간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여성의 참여와 지도력은 모든국면의 그러한 접근에 필수적이다.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지역준비회의는 물론 최근의 개발에 관한 유엔세계회의는 여성과 남성이 똑 같이 포함되지 않은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은 장기간 계속되지 않을 것임을 전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들은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과 관리에 대한 지식 및 환경교육을 산출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여성의 참여를 요구하였다.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환경에 대한 여성의 경험과 기여는 그러므로 21세기를 위한 의제의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여성의 환경관리에 대한 기여가 인식 및 지지되지 않는 한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가 될 것이다.

252. 천연자원의 보존 및 관리와 환경보호에 대한 여성의 기여를 적절히 인식 및 지원하는 것이 부족함을 천명함에 있어서, 정부와 기타 주체자들은 결정이 취해지기 전에 여성과 남성 각각에게 미치는 영향의 분석을 적절하게 포함하여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성관점을 주류화하는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을 촉진해야 한다.

전략목표 K.1. 모든 수준의 환경의사결정에 여성을 적극적으로 포함한다.

향후활동

253. 적절하게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차원의 정부:

- (a) 토착민 여성을 포함한 여성이 관리자, 설계자 및 계획자와 환경사업의 이행자 및 평가자로 포함되는 모든 수준의 환경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보장한다.
- (b) 과학, 기술 및 경제 부문을 포함하여 정보와 교육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촉진 및 증가 시킴으로써 환경의사결정의 참여에 대한 그들의 지식, 기술 및 기회를 향상한다.
- (c) 전통의학, 생물다양성 및 토착적인 기술과 관련된 경험을 포함하는 토착 및 지역사회 여성의 지식, 기술혁신 및 경험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이용을 국내법의 준수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35/에 따라 권고하며, 이러한 것들이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존중, 유지, 증진 및 보존되도록 보장하고 그러한 지식의 보유자들을 승인 및 포함함으로써 그것들의 보다 광범위한 적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더불어 국내 및 국제법하에 보호되어 있듯이 이들 여성들의 기존 지적소유권을 보호한다; 국내법의

준수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및 관련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지식, 기술혁신과 경험들의 효과적인 보호와 이용에 대한 부가적인 방법과 수단을 발견하도록 필요한 곳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수행하며, 그러한 지식, 기술혁신과 경험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권고한다.

- (d)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18/에서 합의된 예방적 접근을 고려한 청정 기술의 적절한 적용을 포함하여 가정, 직장과 기타의 환경에서 확인된 환경 위험요소로부터 여성에 대한 위험을 감소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e)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관리기제, 생산기술과 농촌 및 도시지역의 하부구조의 개발을 특히 계획하고 이행하는데 있어서 성관점을 통합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 (f) 여성이 자신의 가정,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남성과 더불어 효과적인 환경적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산자 및 소비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한다.
- (g) 공익사업요구, 공간계획과 도시하부구조의 설비 및 설계를 인지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 특히 여성의 참여를 촉진한다.

254. 적절하게 정부, 국제기구와 사적부문기관:

- (a) 지속가능한개발위원회 및 기타 적절한 유엔기구의 업무와 국제재정기관의 활동에 성 영향을 고려하도록 한다.
- (b) 지구환경기구와 기타 적절한 유엔기구에서 자금지원을 받는 사업의 계획, 승인 및 실행에 여성을 포함하고 성관점을 통합하도록 촉진한다.
- (c)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지구환경기구와 여성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한 관련분야의 사업설계를 권고한다.
- (d) 천연자원관리와 환경보호 및 보존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개발 및 이행에 의사결정자, 계획자, 관리자, 과학자 및 기술자문자로서와 수혜자로서 포함되는 여성의 비율, 특히 풀뿌리 단계에서의 여성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전략과 기제를 확립한다.
- (e) 환경파괴와 여성에게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을 표명하도록 사회, 경제, 정치 및 과학적 기관들을 권고한다.

255. 비정부기구와 사적부문:

- (a) 여성에 대한 환경 및 천연자원관리 관심사의 옹호를 떠맡고 환경보호 및 보존을 위한 자원동원에 기여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b) 자원관리와 생물다양성의 보존에 있어서 여성농업종사자, 어부 및 목축업자의 중대한 역할과 전문지식을 지원 및 강화하도록 지식, 기술, 마케팅서비스와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에 대한 그들의 접근을 촉진한다.

전략목표 K.2.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관심사와 관점을 통합한다.

향후활동

256. 정부:

- (a) 국토의 환경파괴를 천명하고 방지하도록 계획된 것들을 특별히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남성과 대등하게 토착민여성을 포함한 여성, 그들의 관점과 지식을 통합한다.
- (b) 환경영향과 천연자원 및 천연자원의 이용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접근면에서 정책과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 (c) 특별한 그룹의 여성, 특히 저소득여성, 토착민여성과 소수집단에 속하는 여성에 관한 연구 및 자료수집을 필요한대로 포함하여 여성이 환경파괴와 위협에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특별하게 영향받기 쉽고 혹은 노출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적절한 연구로도 모한다.
- (d) 환경관리와 농촌지도프로그램의 개발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사용 및 관리에 대한 농촌 여성의 전통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합한다.
- (e) 지속가능한 인간정주를 개발하기 위하여 성인지 연구의 결과를 주류정책에 통합한다.
- (f) 토착민 여성의 지식과 경험에 특별히 초점을 둔 식량모으기와 생산, 토양보존사업, 관개, 수로관리, 위생설비, 연안지역 및 해양자원관리, 통합해충관리, 토지사용계획, 삼림보존 및 지역삼림지, 어장, 자연재해방지와 새롭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특히 농촌 및 토착민 여성의 역할에 관한 지식을 촉진하고 연구를 지원

한다.

- (g) 지속가능한 개발과 자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 및 통제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에 대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변화를 위한 전략을 개발한다.
- (h) 천연 및 지역적인 자원과 생태계의 관리 및 적절한 이용에 대한 지역의 경제, 과학과 환경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소녀와 모든연령의 여성이 알고 선택을 하고 알고 투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과학, 기술, 경제 및 자연환경과 관련된 기타학문분야에서 그들의 교육을 촉진한다.
- (i) 환경관리에 기술, 행정 및 사무 직원은 물론 여성전문가와 과학자를 포함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이들 분야에서 소녀와 여성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의 고용과 승진기회를 확대하며 이들 활동에서 여성의 전문지식과 참여를 증진시키도록 특별조치를 이행한다.
- (j) 여성과의 협의하에 계획, 개발 및 향상되고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적합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을 규명 및 촉진한다.
- (k)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참여요구도평가, 에너지계획과 정책입안을 통하여 주택하부구조, 안전한 물과 바람, 태양, 생물자원 및 기타 재생가능한 자원과 같은 지속가능하고 공급가능한 에너지 기술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접근 개발을 지원한다.
- (l) 2000년까지 모두에게 깨끗한 물을 이용 및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며 오염된 물의 체계를 복구하고 손상된 수로를 재건하도록 환경보호 및 보존계획이 설계 및 이행되도록 보장한다.

257. 국제기구, 비정부기구와 사적부문기관:

- (a) 환경문제, 특히 상품, 기술 및 산업과정의 환경 및 보건영향에 관한 인식을 증진하는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산업에 여성을 포함한다.
- (b) 환경적으로 안전한 상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업, 어업, 상업 및 산업 활동과 공업기술에의 투자를 권고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그들의 구매력을 이용하도록 권고한다.
- (c) 소비자들이 연령 및 문해수준에 관계없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표기로 중독성 화학제품과 농약용기에 상표를 붙이는 것을 포함하여 자연식품과 재활용시설, 상품정보와

상품의 상표붙이기에 대한 마케팅을 촉진함으로써 여성의 소비자 주도권을 지원한다.

전략목표 K.3. 개발과 환경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기제를 강화 혹은 설치한다.

향후활동

258. 적절하게 정부, 지역 및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

- (a)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의 촉진과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 및 여성기업가정신의 개발을 도모하도록 농업, 어업, 소규모사업, 무역 및 산업 부문에 있어서 여성, 특히 개발도상국의 여성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 (b) 학술기관 및 지역여성연구자와 협력하여 다음에 관한 성인지 데이터베이스, 정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과 참여행동중심연구, 방법론 및 정책분석을 개발한다.
 - (i)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정보시스템에서의 통합을 위하여 천연자원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여성부문의 지식과 경험
 - (ii) 환경 및 천연자원의 파괴, 그 중에서도 지속불가능한 생산과 소비형태, 한발, 질이 좋지않은 물, 지구온난화, 사막화, 해수면상승, 유해폐기물, 자연재해, 중독성화학제품과 농약잔류물, 방사성폐기물, 무력분쟁과 그것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 (iii) 농업, 산업, 어업, 임업, 환경보건, 생물다양성, 기후, 수자원 및 위생과 같은 특별 부문에 특별한 중점을 둔 성관계, 환경과 개발 사이의 구조적인 연관관계의 분석
 - (iv) 프로그램과 정책의 개발 및 모니터링에 있어서 기본적인 단계로서 환경, 경제, 문화, 사회 및 성인지 분석을 개발 및 포함하는 조치
 - (v) 여성에게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을 보급해줄 농촌과 도시의 훈련, 연구 및 자원 센터를 창설하기 위한 프로그램
- (c) 관련있는 곳의 경계를 초월한 유해폐기물(유독폐기물 포함)의 이동과 관련된 바젤협약 및 기타의 협약과 방사성폐기물의 이동과 관련된 국제원자력기구의 실행법을 포함

하여 관련된 국제적인 의무사항을 충실히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안전한 보관 및 이동과 관련된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 및 실행한다; 불안정하고 불안정한 이동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고려한다; 관련된 국제 및 지역적 의무사항에 따라 유해폐기물과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관리를 보장하고 개별적으로 혹은 국제협약을 통하여 그러한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들에게 그와같은 폐기물을 수출하는 것을 제거한다.

- (d) 여성과 환경에 관한 의제21의 이행을 검토할때 여성지위위원회로 부터의 입력을 탐색하기위하여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특히 지속가능한개발위원회를 요청함으로써 행동강령과 의제21의 24장을 이행하도록 기관들내에서와 기관들간의 기능조정을 촉진한다.

L. 여 아

259.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국가는 아동 혹은 그나/그녀의 부모 혹은 법정 보호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 혹은 기타의 견해, 국적, 종족 혹은 사회적 기원, 재산, 장애, 출생 혹은 지위와 관계없이 어떤 종류의 차별도 갖지 않는 그들의 사법권내에서 모든 아동에게 현재의 협약에서 공포한 권리를 존중 및 보장해야할 것"(1항 2조)11/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나라의 이용가능한 지표는 여아가 생의 가장 초기단계로부터 유년기를 통하여 성인기까지 차별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의 어떤지역은 남성이 100명당 5명까지 여성보다 수가 많다. 그 불균형의 이유는 특히 여성생식기절단, 남아선호-여영아살해 및 태아성감별을 초래함-아동혼인을 포함한 조혼, 여성에 대한 폭력, 성착취, 성적학대, 식량할당과 기타 보건 및 복지와 관련된 관행에서의 소녀에 대한 차별과 같은 해로운 태도와 관행을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소녀는 소년보다 더 적게 성인기까지 생존한다.

260. 소녀들은 종종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으며 자신들을 마지막에 포함하도록 사회화됨으로서 자신들의 자존을 손상시키고 있다. 어린시절의 차별과 방치는 사회의 주류로부터 박탈 및 배제된 일생동안의 악순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 모든 수준의 사회, 경제, 정치 및 문화적인 지도력에서 소녀들이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또한 소년들과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주도적 역할이 준비되어야 한다.

261. 교육과정, 교육자료 및 실습, 교사의 태도 및 교실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성편견적인

교육과정은 기존의 성불평등을 강화한다.

262. 소녀와 청소년들은 그들의 부모, 교사, 동료와 미디어로부터 그들의 성역할에 관한 다양한 갈등과 혼돈의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다. 여성과 남성은 아래의 267항에 언급되어 있는 것과 같이 아동의 권리와 부모의 책임, 권리 및 의무를 고려하여 완고한 성고정관념을 타파하도록 아동 및 청소년들과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263. 몇몇나라에서는 지난 20년간 교육받은 아동의 수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들이 소녀들보다 비례적으로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 1990년에는 1억3천만명의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다; 이들중 8천1백만명이 소녀였다. 이것은 위의 29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관습적인 태도, 아동노동, 조혼, 자금부족 및 적합한 학교시설의 부족, 10대의 임신과 가정은 물론 사회에 널리 만연된 성불평등과 같은 요인들에 기인될 수 있다. 몇몇 나라에서는 여교사의 부족이 소녀들의 입학에 금할 수도 있다. 많은 경우에 소녀들은 매우 어린나이에 막중한 가사일을 떠맡기 시작하며 교육적 및 가정적인 책무를 처리하도록 기대를 받고 종종 낮은 학업성취와 학교교육으로부터 일찍 중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64. 많은나라에서 중등학교에 입학한 소녀들의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난다. 소녀들은 종종 과학 및 기술적인 훈련과 교육을 추구할 기회를 격려받지 못하거나 부여받지 못하며 그것은 그들의 일상과 고용기회를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제한한다.

265. 소녀들은 의사결정과정의 참여에 소년들과 똑같은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결과 사회의 사회, 경제 및 정치적인 작용에의 참여와 습득에 소년들보다 더 적게 격려받는다.

266. 영양과 신체 및 정신적 건강서비스에 대한 여아의 접근에 있어서 여아에 대한 기존 차별은 여아의 현재와 미래의 건강을 위태롭게 한다. 개발도상국의 4억5천만으로 추정되는 성인여성들은 어린시절의 단백질에너지 영양결핍의 결과 발육이 부진하다.

267. 국제인구개발회의는 행동프로그램의 7.3항14/에서,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부응하여 승인된 아동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어느정도 아동의 발전역량과 부합되는 적절한 방침 및 지침을 제공하는 부모와 법정보호자의 책임감, 권리와 의무는 물론 정보, 사생활, 비밀, 존중과 인지도에 접근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여 "상호간 존경받을 만하고 공평한 성관계의 촉진에 전적인 배려가 주어져야하며 특히 청소년들이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그들의 성성을 다룰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교육 및 서비스 요구의 부응에도 전적인 배려가 주어져야 함"을 인정하였다. 아동에 관한 모든 조치중에서 아동에게 가장

좋은 이점은 첫번째 고려의 대상이 되는것이다. 청소년 자신들의 성성과 생식능력에 대한 남성의 책임감을 강조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실행하도록 도움을 주는 부모의 지원과 지도로 청소년들을 위한 완전한 성교육에 지원이 주어져야 한다.

268. 1천5백만 이상의 15-19세의 소녀들이 매년 출산을 하고있다. 매우 어린 나이의 모성은 임신과 분만동안의 곤란함과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모성사망의 위험을 수반한다. 어린 어머니의 아동들은 더 높은 수준의 상병률과 사망률을 지닌다. 조기 출산은 전세계에서 여성의 교육, 경제 및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는데 계속 장애가 되고 있다. 결국 조혼과 일찍 어머니가 되는 것은 교육과 고용기회를 심각하게 단축시킬 수 있으며 그들 및 그들의 어린이들의 삶의 질에 장기간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69. 성폭력과 HIV/AIDS를 포함하는 성병은 아동의 건강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녀들은 보호되지 않은 조숙한 성관계의 결과에 소년들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 소녀들은 종종 성행위에 종사하도록 압력을 받는다. 소녀들은 그들의 젊음, 사회적 압력, 보호법률의 부족 혹은 법률시행의 실패와 같은 요인들 때문에 모든 종류의 폭력, 특히 강간, 성적학대, 성착취, 국제인신매매, 그들의 기관 및 조직의 판매와 강제 노동을 포함하는 성폭력에 훨씬 더 취약하다.

270. 장애여아는 추가적인 장애에 직면하며 장애인에 기회평등화에 관한 표준규칙30/에 따라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비차별과 동등한 향유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271. 다소의 아동들 특히 버려지고, 집이 없으며 쫓겨난 부랑아들, 분쟁지역의 아동들과 종족 혹은 소수인종그룹에 속한다는 이유로 차별 받는 아동들은 특별히 취약하다.

272. 교육과 훈련, 영양, 신체 및 정신적 건강보호와 관련정보에의 동등한 접근을 통하여 소녀들이 예외없이 그들의 모든 잠재력과 기술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모든 장애가 제거되어야 한다.

273. 아동과 청소년들에 관한 문제를 천명함에 있어서 정부는 의사결정이 취해지기 전에 소녀와 소년 각각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에 성관점을 주류화하는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을 촉진해야 한다.

전략목표 L.1. 여아에 대한 모든형태의 차별을 제거한다.

향후활동

274. 정부:

- (a) 아동권리협약을 서명 혹은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은 1995년말까지 동협약을 서명하도록 세계인권회의에서 결의된 강력한 권고를 명심하여 동 협약의 서명 및 비준에 대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동 협약을 서명 및 비준한 국가는 필요한 모든 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의 채택을 통하여 또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전적인 존중을 격려하는 가능한 환경을 조장함으로써 동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도모한다.
- (b) 아동권리협약 7조11/에 따라, 아동은 출생 즉시 신고되고 출생과 더불어 이름을 가질 권리와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지며 가능한 한 즉시 그 혹은 그의 부모를 알권리와 그들에 의해 부양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다.
- (c) 기타의 조치들 가운데 아동지원법률을 시행함으로써 아동들이 그들의 부모로부터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다.
- (d) 아동의 성별에 관계없이 계승권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보증하고 상속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을 특히 적절하게 제정 및 수행하므로써 모든 아동들이 차별없이 그들의 권리를 향유하도록 여아가 직면하고 있는 상속에 관한 불의와 장애를 제거한다.
- (e) 결혼은 오직 미래부부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따라 시작되는 것임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엄격히 시행한다; 더불어 결혼동의를 최저법적연령과 결혼최저연령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엄격히 시행하며 필요한 곳에서는 결혼최저연령을 끌어올린다.
- (f) 여아의 완전한 인권 향유를 촉진 및 보호하고 여아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여아의 생존, 보호, 발전 및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행동계획과 프로그램을 개발 및 이행한다; 이 계획들은 전체 발전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
- (g) 그러한 프로그램의 계획, 이행 및 모니터링에 성관점을 포함하도록 보건, 교육 및 기타 부문에서 아동들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성별 및 연령별 분리를 보장한다.

275. 정부와 국제 및 비정부기구:

- (a) 아동들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성별 및 연령별로 분리하고 소녀들의 현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여아의 발전을 위한 정책입안, 프로그램 및 의사결정에 적절하게 그 결과를 통합한다.
- (b) 특별히 소녀들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결혼의 최저법적연령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대하여 사회적인 지원을 창출한다.

전략목표 L.2. 소녀들에 대한 부정적인 문화적 태도와 관행을 제거한다

향후활동

276. 정부:

- (a) 소녀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관습의 변화를 촉진하려는 비정부기구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기구들의 노력에 있어서 적절하게 그들을 격려 및 지원한다.
- (b) 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하며 성인들을 인지화하고 성인들에게 여아들에 관한 전통적이거나 혹은 관례적인 관행의 해로운 영향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될 교육자료와 교과서를 개발한다.
- (c) 수학, 과학 및 기술과 같은 특별히 여성이 전통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분야에 있어서 소녀들의 자아상, 삶과 근로기회를 증진하도록 교육과정, 교육자료와 교과서를 개발 및 채택한다.
- (d) 전통 및 종교와 그것들의 표현이 소녀들에 대한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277. 정부와 적절한대로 국제 및 비정부기구:

- (a) 값이 알맞고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아동보호시설과 그들의 아동 및 형제자매가 학교교육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학교교육을 계속하고 완료하기까지 그들의 학년도기간 동안 그들의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부모교육을 적절하게 포함하여 결혼 및/혹은 임신한 소녀들과 어린나이의 어머니들의 학교교육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교육적 환경을 촉진한다.

- (b) 소녀 및 소년들의 균형있고 비정형화된 이미지를 채택 및 계획하도록 교육기관과 미디어를 격려하며 아동의설문과 여아에 대한 비하적이고 폭력적인 묘사를 제거하도록 노력한다.
- (c)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태아성감별 및 여영아살해와 같은 해롭고 비윤리적인 관행을 초래하는 남아선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한다; 이것은 종종 여자태아의 유산을 초래하는 태아의 성을 결정하는 기술의 사용증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 (d) 소녀들을 지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며 자존감을 개발하고 그들 자신들의 삶에 책임감을 갖게하는 형식 및 비형식 교육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리고 식량할당에서의 소녀에 대한 차별제거, 조혼, 소녀에 대한 폭력, 여성생식기절단, 아동매춘, 성적학대, 강간 및 근친상간을 포함하여 소녀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과 복지의 중요성에 관하여 여성과 남성, 특히 부모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특별한 초점을 둔다.

전략목표 L.3. 여아의 권리를 촉진 및 보호하며 그들의 요구와 잠재력에 대한 인식을 증진한다.

향후활동

278. 정부와 국제 및 비정부기구:

- (a) 세대와 지역사회내에서는 물론 모든 수준의 정책입안자, 계획자, 행정가와 이행가들 사이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녀들의 현황에 대한 인식을 창출한다.
- (b) 여아,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여아로 하여금 자신의 잠재력을 알도록 하며, 아동권리협약, 여아를 위해 제정한 법률과 여아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 및 비정부기구에 의해 채택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여 모든 국제인권문서하에 여아에게 보장된 권리에 대하여 여아를 교육한다.
- (c) 소녀들의 지위를 촉진하고 그들이 소녀와 소년들 사이의 상호존중과 동등한 동반자 관계를 위해 노력하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여성, 남성, 소녀와 소년을 교육한다.
- (d) 장애소녀들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와 장비의 동등한 지급을 촉진하고 그들의 가족에게

관련 지원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한다.

전략목표 L.4. 교육, 기술개발과 훈련에 있어서 소녀들에 대한 차별을 제거한다.

향후활동

279. 정부:

- (a) 모든 아동들의 초등교육 및 초등교육의 완료에 대한 보편적이고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며 아동권리협약의 28조11/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과 같이 소녀와 소년들 사이의 현존 차이를 제거한다; 마찬가지로 2005년까지 중등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며 혜택을 받지못하거나 혜택을 받은 소녀와 소년을 포함한 모든 소녀와 소년들을 위한 직업 및 기술교육을 포함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도 보장한다.
- (b) 개발프로그램에 특히 미취학 소녀들을 위하여 실용본위의 문해 및 수학능력 프로그램을 통합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 (c) 교육프로그램에서 인권교육을 촉진하며 여성과 여아의 인권은 보편적인 인권의 양도 할수 없고 완전하며 불가분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권교육에 포함한다.
- (d) 적절한 예산재원을 할당하고 캠페인과 융통성 있는 학교일정, 동기부여, 장학금제도, 미취학 소녀를 위한 접근 프로그램과 기타 조치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부모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소녀의 입학율을 증대하고 재학률을 향상한다.
- (e) 교사와 교육자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에 그들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교사와 교육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한다.
- (f) 여성 교사와 교수가 남성 교사 및 교수와 똑같은 가능성과 지위를 갖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다.

280. 정부와 국제 및 비정부기구:

- (a) 소녀의 고용기회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접근을 증대하도록 교육과 기술훈련을 제공

한다.

- (b) 경제, 재정 및 정치적 시스템의 기능과 관련된 소녀의 지식과 기술을 증대하도록 교육을 제공한다.
- (c) 장애여아가 그들의 삶에 전적으로 참여하도록 적절한 교육과 기술훈련에의 접근을 보장한다.
- (d) 스포츠, 드라마와 문화활동과 같은 특별교과과정 활동에 소녀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를 촉진한다.

전략목표 L.5. 보건과 영양에서 소녀들에 대한 차별을 제거한다.

향후활동

281. 정부와 국제 및 비정부기구:

- (a) 식량할당, 영양과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소녀들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의 제거에 관한 공공정보를 제공한다.
- (b) 양질의 일반보건과 영양에 관하여 여아, 부모, 교사와 사회를 인지화하고 조기임신과 관계된 건강위험과 기타 문제에 대한 인식을 증진한다.
- (c) 성·재생산 관련 건강을 포함하여 보건교육과 보건서비스, 특히 1차 보건의료프로그램을 강화 및 재교육하며, 소녀들의 신체 및 정신적 요구에 부응하고 어린어머니, 임신부 및 수유모의 요구에 주의하는 양질의 보건프로그램을 설계한다.
- (d) 국제인구개발회의의 행동프로그램에서 동의되고 본 행동강령의 267항에서 언급된 부모의 역할을 인정하는 상기회의의 보고서에 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HIV/AIDS와 기타 성병에 대한 소녀들의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개인적 및 집단적 행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집단교육과 현장지원프로그램을 설치한다.
- (e) 국제인구개발회의의 행동프로그램에서 동의되고 동 회의의 보고서에 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은 재생산의 생리현상, 재생산·성관련 건강, 267항에서 언급된 부모의 역할을 인정하는 책임있는 가족계획실행, 가족생활, 재생산적보건, 성병, HIV감염 및

AIDS 방지에 관하여 소녀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교육 및 정보보급을 보장한다.

- (f) 여아의 이익을 위하여 초기단계에서 시작하는 문해프로그램과 학교 교육과정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보건과 영양 훈련을 포함한다.
- (g) 267항에서 논의된 것과 같은 적절한 서비스와 상담의 제공을 통하여 성·재생산관련 건강과 행동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 (h) 보건계획자와 이행자를 위하여 여아의 특별한 보건 요구에 대한 정보와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i) 아동권리협약의 24조11/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과 같이 아동들의 건강에 해가되는 전통적인 관행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전략목표 L.6. 아동의 노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제거하고 직장에서 어린소녀들을 보호한다.

향후활동

282. 정부:

- (a) 아동권리협약의 32조11/에 따라, 경제적 착취와 위험하거나 혹은 아동의 교육을 방해하거나, 혹은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혹은 사회적 발전에 해로운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한다.
- (b) 모든 활동분야의 소녀들을 포함하는 현존 국제노동기준과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국내법에 아동의 고용허가에 대한 최저연령을 규정한다.
- (c) 직장의 어린소녀들을 특히 다음 사항을 통하여 보호한다:
 - (i) 고용허가에 대한 최저연령 혹은 연령
 - (ii) 근로조건의 엄격한 모니터링(근로시간 중시, 국내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아동들의 근로금지와 작업장의 위생 및 보건조건에 대한 모니터링)
 - (iii) 사회보장범위의 적용

(iv)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의 설치

- (d) 아동들의 근로를 통제하는 법률을 필요한 곳에서는 강화하며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합한 처벌 혹은 기타 제재를 마련한다.
- (e) 국가의 노동법률과 정책의 입안을 선도하기 위하여 근로아동보호를 위한 ILO 기준을 적절하게 포함하는 현존 국제노동기준을 이용한다.

전략목표 L.7. 여아에 대한 폭력을 근절한다.

향후활동

283. 정부와 적절하게 국제 및 비정부 기구:

- (a) 훈련프로그램과 지원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직장의 모든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소녀들의 안전 및 보안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도록 효과적인 행동과 조치를 취하며 교육 및 기타 기관에서 소녀들에 대한 성희롱사건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한다.
- (b) 성적학대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폭력, 상해 혹은 폭언, 방치 혹은 무관심한 대우, 학대 혹은 착취로부터 가정과 사회에서 여아를 보호하도록 적절한 법률, 행정, 사회 및 교육적인 조치를 취한다.
- (c) 폭력의 희생자인 소녀들을 위한 치유 및 복귀프로그램과 기타 원조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을 위해 성인지화 훈련을 수행하며 그러한 소녀들을 위한 정보, 지원 및 훈련프로그램을 촉진한다.
- (d) 여영아살해와 태아성감별, 생식기절단, 근친상간, 성적학대, 성착취, 아동매춘 및 아동외설물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소녀들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며 폭력을 당한 소녀들을 원조하도록 연령에 적합한 안전 및 신뢰프로그램과 의학, 사회 및 심리적인 지원서비스를 개발한다.

전략목표 L.8. 사회, 경제 및 정치적 삶에 대한 여아의 인식 및 참여를 촉진한다.

향후활동

284. 정부와 국제 및 비정부기구:

- (a) 사회, 문화, 경제 및 정치적인 문제에 관한 훈련, 정보와 미디어에 소녀들을 위한 접근을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견해를 분명히 말할 수 있게한다.
- (b) 비정부기구, 특히 사회에서 소녀들의 평등과 참여를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청소년 비정부기구를 지원한다.

전략목표 L.9. 여아의 지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가정의 역할을 강화한다.

향후활동

285. 정부, 비정부기구와 협력하여:

- (a) 여아에 대한 가족내의 차별제거에 특별한 중점을 둔 가족의 지원, 교육 및 양육역할에 있어서 위의 29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가족을 돕도록 정책과 프로그램을 입안한다.
- (b) 여아의 잠재력을 보호, 존중 및 촉진하는 지지적이고 예방적인 조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의 29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가족의 강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한다.
- (c) 위의 29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가족내에서 소녀와 소년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소녀와 소년사이의 책임분담을 보장하도록 부모와 보호자들을 교육 및 권고한다.

V. 제도적 조치

286. 행동강령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해야만 하는 행동들의 집합체이다. 200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즉각적인 행동과 책임이 필수적이다. 강령의 이행은 우선적으로 정부의 책임이지만 또한 지역, 국가, 소지역/지역 및 국제적인 차원의 공적, 사적, 비정부 부문의 넓은 범위의 기구들에게도 달려있다.

287. 유엔여성 10년(1976~1985)동안 특히 여성발전에 기여한 많은 기구들이 국가, 지역 및 국제차원에서 설립되었다. 국제차원에서는 국제여성연구훈련원(INSTRAW), 여성발전기금(UNIFEM)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개체들은 여성지위위원회(CSW)와 위원회 사무국인 여성향상국(DAW)과 함께 유엔에서 특별히 세계적으로 여성발전에 기여하는 주요 기관들이 되었다. 국가차원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여성발전을 계획하고, 주창하고, 발전과정을 모니터하기 위하여 국가기구들을 설립하고 강화했다.

288. 국가, 소지역/지역 및 국제기관에 의한 행동강령의 공적·사적인 이행은 투명성, 관계망과 기구들간의 연계증가 및 모든 관련 당사자들간의 지속적인 정보유통에 의해 촉진될 것이다. 뚜렷한 목표와 책임을 질수 있는 기관들이 또한 요구된다. 국가, 소지역/지역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다른 기관들과의 연계와 여성발전에 기여한 네트워크와 기구들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289. 비정부와 풀뿌리 기구들은 남녀간의 평등에 기반한 사회, 경제, 정치 및 지적인 풍토를 조성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여성은 행동강령을 이행하고 모니터하는데 능동적으로 개입되어야 한다.

290. 강령의 효과적인 이행은 또한 여성발전을 저해하는 가치, 행동, 규칙 및 절차를 포함하여 기관과 기구들 내의 역학관계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성희롱은 근절되어야 한다.

291. 국가, 소지역/지역 및 국제기관들은 강력하고 명확한 임무를 가져야 하며, 행동강령에 명시된 임무를 위해 필요한 권한, 자원 및 책임을 질 기체가 필요하다. 그들의 운영방법은 행동강령의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남녀간의 평등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과 기준을 모든 행동의 기본으로 하는 명백한 공약이 있어야 한다.

292. 행동강령의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하고, 국가, 소지역/지역 및 국제수준의 여성발전을

위한 과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유엔체제 및 모든 관련기구들은, 특히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을 모니터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성적 관점을 주류화하는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을 증진하여야 한다.

A. 국가차원

293. 정부는 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한 우선 책임을 지고 있다. 최고정치차원의 공약은 이의 이행에 필수적이며, 정부는 여성발전의 진전을 조정하고,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제4차 세계여성회의는 국가·국제적인 공약과 행동의 회의이다. 이는 정부와 국제사회로 부터의 공약이다. 행동강령은 지속적인 과정의 일부이며, 모든 연령의 소녀와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실질적인 성과에 기여하는 촉매작용의 효과를 갖고 있다. 국가와 국제사회는 행동을 위한 공약을 하므로써 이러한 도전에 부응하도록 고무된다. 이러한 과정의 일부로서, 많은 국가들은 특히 그들 국가의 발언문에 언급된대로 행동을 위한 공약을 만들었다.

294.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기구나 기관들은 공공정책입안에 참여하고, 사적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체와 기관들을 통하여 행동강령의 이행을 촉진하여야 하며, 현존하는 제도에 의하여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2000년까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필요한 곳에는 촉매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295. 입법기구, 학계와 연구소, 전문인협회, 노동조합, 협동조합, 지역공동체 및 금융기관과 비영리단체뿐만 아니라 여성단체, 여권주의자그룹, 종교그룹, 청년단체와 문화그룹을 포함한 비정부기구들을 포함하여 다른 제도적인 주체들의 폭넓고 다양한 범위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고무되어야 한다.

296. 행동강령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정부가 최고정치차원에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 기구와 행정부 내외 행정부 간의 적절한 절차와 인력배치 및 성에 근거한 분석을 정책과 프로그램에 통합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을 가진 다른 기구들을 설립하거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든 기관들을 위한 첫걸음은 그들의 목적, 프로그램 및 강령이 요구하는 행동들의 운영절차등을 점검하는 일이어야 한다. 특히 대중매체와 공공교육을 통한 핵심적인 활동은 행동 강령의 목표에 대한 공공의 인식제고와 지원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297. 가능한 한 속히, 가급적이면 1995년 말까지, 정부는 관계기관과 비정부 기구들과 협의하여 강령을 위한 이행 전략을 개발하고, 가급적이면 1996년 말까지는 국가전략과 행동계획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획과정에는 정부의 최고권위자와 시민사회의 관련 활동자들도 끌어들여야 한다. 이러한 이행 전략들은 포괄적이고, 시간이 제한된 목표,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표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행을 위한 자원의 할당·재할당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필요한 곳에는, 자원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298. 비정부기구들은 이러한 전략이나 국가행동계획을 입안하고 이행하는데 기여하도록 고무되어야 한다. 그들은 또한 정부의 노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의 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고무되어야 한다. 여성단체들과 여권주의자 그룹들은 다른 비정부기구들과 협력하여 필요한대로 관계망을 형성하고 정부, 지역 및 국제기구들에 의한 행동강령 이행을 지지하고 지원하도록 고무되어야 한다.

299. 정부는, 모든 국제기구, 기관 및 단체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로 모든 정부임명위원회, 이사회 및 기타 관련 관청에 특별기구의 창설을 통하여 더 많은 여성 후보자를 현저하게 등장시키고 승진시키면서 성별균형의 추진 목표를 세워야 한다.

300. 지역·국제기구, 특히 국제여성연구훈련원(INSTRAW)과 유엔여성발전기금(UNIFEM) 같은 발전기관이나 쌍무공여기구들은 정부와 협력하여 국제기구들이 그들 각자의 임무를 통하여 여성발전을 증진토록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구의 정보수집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이에 대한 재정·자문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B. 소지역/지역차원

301. 유엔의 지역위원회와 다른 소지역/지역조직들은 그들의 임무안에서 관련 국가기구들이 세계행동강령을 모니터하고 이행하는 것을 증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는 경제, 사회, 인권 및 관련분야 유엔회의에 대한 조정된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감안하면서 각 지역의 행동강령이나 계획의 이행과 조정을 이루어야 하며 또한 여성지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02. 지역의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과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사회이사회는 지역행동강령뿐 아니라 세계행동강령에 비추어서 성문제를 다루기 위한 지역의 여성부서/여성전담기구

를 포함하여 유엔지역위원회들의 그들의 임무안에서의 제도적인 역량을 점검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점에서 특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고려가 주어져야 한다.

303. 유엔지역위원회들은 그들이 현재 갖고 있는 임무와 활동범위내에서 여성의 문제와 성관점을 주류화 하여야 하며 지역행동계획이나 강령뿐 아니라 세계행동강령의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기제와 과정의 설립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위원회들은 그들의 임무안에서 다른 지역의 정부간 기구, 비정부기구, 재정연구기관 및 사적 부문과 성문제에 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304. 유엔전문기구들의 지역사무소들은, 적절한대로 시기와 자원의 명시를 포함하여 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개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지역차원에서의 기술협력과 운영활동은 여성발전을 위하여 잘 명시된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유엔기구와 전문기구 사이에 정규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05. 지역내의 비정부기구들은 세계행동강령과 각 지역행동계획에 대한 정보의 지지 및 확산을 조정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개발하려는 그들의 노력에 지원을 받아야 한다.

C. 국제차원

1. 유 엔

306. 행동강령은 1995-2000년 동안 유엔체제의 모든 기구와 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특별히 그리고 좀 더 폭넓은 프로그램 작성에 통합부문으로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엔 세계정상회의 및 세계회의등의 결과를 감안하면서 행동강령의 통합되고 포괄적인 이행, 사후검토 및 평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5-2000년 동안 여성문제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체계가 개발되어야 한다. 모든 정상회의, 세계회의에서 정부들이 각기 다른 분야에서의 여성의 힘의 증진을 위한 공약을 하였다라는 사실은 행동강령을 위한 후속전략의 조정을 중요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발을 위한 의제와 평화를 위한 의제는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행동강령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307. 여성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전문성이나 활동방식뿐 아니라 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한 책임을 수행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유엔체제의 제도적인 역량이 개선되어야 한다.

308. 행동강령의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책임과 유엔체제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관점

을 통합하는 일은 최고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309. 국가차원에서 평등과 여성의 힘의 증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그리고 행동강령의 목표를 이룩하기 위한 그들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하여, 유엔 체제내의 다양한 부서를 갱신, 개혁 및 부흥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주류기구, 전문기구와 관련한 그들의 자문, 촉매 및 모니터링 역할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여성발전을 위한 다른 유엔기체들의 전략과 활동방식을 점검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성/성담당 부서들은 효과적인 주류화를 위하여 중요하지만 모든 운영 전반에 성관점을 주류화하는데 반하는 뜻하지 않은 주변화를 막기 위한 전략이 더 한층 개발되어야 한다.

310.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후속조치에 있어서, 여성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유엔체제내의 모든 개체들은 후속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가져야만 한다. 기구들 내에서의 성전담기구들의 노력은 전반적인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예산에 잘 통합되어야 한다.

311. 행동강령에 따라 그들의 기구내에서 여성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유엔과 다른 국제기구들에 의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유엔총회

312. 유엔총회는 유엔 내에서의 최고 정부간 기구로서 세계회의의 후속조치와 관련한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평가하는 기관이며 따라서 업무 전반에 성문제를 통합하여야 한다. 총회는 성문제가 사회, 정치 및 경제 정책에 걸쳐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행동강령의 효과적인 이행의 진행과정을 평가하여야 한다. 1995년 제50차 회의에서 유엔총회는 제4차세계여성회의의 보고서를 상정받게 될 것이다. 결의 49/161에 의거하여, 총회는 세계회의의 권고를 고려하면서 회의 후속조치에 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총회는 세계회의의 후속조치를 여성발전에 관한 계속사업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한다. 1996년, 1998년과 2000년에 총회는 행동강령의 이행을 점검하여야 한다.

경제사회이사회

313.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헌장하에서의 역할과 같은 맥락에서 또한 유엔총회결의 45/264, 46/235 및 48/162에 의거하여 행동강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직 전반에 걸친

조정업무를 섭렵하고 이에 관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여성지위위원회 보고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행동강령의 이행을 점검하도록 요청되어야 한다. 조정기구로서 이사회는 다른 관련위원회와 세계회의의 후속조치의 효과적인 조정을 위한 요구를 감안하면서 여성지위위원회의 임무를 점검하도록 요청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여성지위위원회에 의해 마련된 권고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모든 정책문제 토론에 성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사회는 2000년전까지, 특히 유엔전문기구, 세계은행(World Bank)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로 여성발전과 행동강령을 이행하기 위한 적어도 최고수준의 부서 하나를 개설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314. 이사회는 2000년전까지 개정된 조직전반에 걸친 여성발전 중기계획에 근거하여 여성발전을 조정하는 적어도 하나의 조정부서를 개설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315. 이사회는 2000년전까지 유엔체제내의 기금과 프로그램에 의한 행동강령의 이행지침과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조직 전반에 걸친 중기 계획에 근거하여, 성과관련된 발전활동을 조정하는 적어도 하나의 운영활동부서를 개설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316. 조정행정위원회(ACC)는, 행동강령의 목표를 이행하고 후속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전반에 걸친 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간의 수준에서, 특히 현존하는 절차를 통하여, 참여개체들이 그들의 활동을 어떻게 최고로 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여성지위위원회

317.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는, 그들 각자의 임무에 따라 기타 관련 위원회들과의 협동작용, 회의 후속조치 및 강령의 이행을 위한 제도 전반적인 접근을 위한 요구뿐만 아니라 강령을 고려하면서 여성지위위원회의 임무를 점검하고 강화하도록 요청된다.

318. 경제사회이사회를 지원하는 기능위원회로서, 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체제내 행동강령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이사회에 알리는데 중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의 일반예산내에서 자원의 재할당을 통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과 재정자원을 갖춘 명확한 임무를 가져야만 한다.

319.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가 유엔체제의 관련기구와 함께 행동강령의 이행에 대해 보고하는 조정역할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위원회는 적절한 대로 유엔체제의 다른 기구들과 다른 출처로부터의 정보를 끌어내야 한다.

320. 여성지위위원회는 1996~2000 동안의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행동강령의 주요관심분야를 점검하고 세계여성회의의 후속조치를 의제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지위위원회는 위원회가 유엔활동에 성관점을 주류화하는데 있어 촉매적인 역할을 어떻게 더한층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하여야만 한다.

기타 기능위원회

핵심적인 활동은, 321. 그들의 임무내에서, 경제사회이사회와 기타 기능위원회들은 행동강령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그들 각자의 활동에 성관점 통합을 도모하여야 한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기타 협약기구

322.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 하에 위원회의 책임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위원회의 임무안에서 각국에 의해 제출된 보고서를 심의할때 행동강령을 고려하여야 한다.

323.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협약 제18조에 관해 보고할 때, 협약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향유하도록 여성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모니터 하는데 있어,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해 채택된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것이 요청된다.

324.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을 모니터하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능력이 유엔의 일반에 산안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포함하여 인력과 재정자원에 대한 항목을 통해서, 또한 총회결의 49/164와 1995년 5월 개최되었던 협약당사국 회의에 의해 만들어진 위원회의 충분한 회의시간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강화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비엔나선언과 행동프로그램의 권고를 고려하면서 기타 인권협약기구들과의 조정을 증대하여야 한다.

325. 그들의 임무내에서, 다른 협약 기구들은 행동강령의 이행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그들 각자의 활동에 여성의 평등한 지위와 인권의 통합을 도모해야 한다.

유엔사무국

사무총장실

326. 사무총장은 관련기구들의 임무를 고려하면서 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한 유엔내에서의

정책을 조정하고, 유엔의 모든 활동에 체제 전반적인 성관점의 주류화를 위한 책임을 지도하도록 요구된다. 사무총장은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조정의 도모를 위한 특별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무총장은 현존하는 인력자원과 재정자원을 이용하면서 성문제에 관하여 사무총장의 고문으로써 활동하고, 여성향상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전반에 걸친 행동강령의 이행을 도모하도록 돕기 위한 고위직을 사무총장실에 설치하도록 요청된다.

여성향상국

327. 정책조정·지속가능한 발전부산하 여성향상국의 주요 기능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뿐 아니라 여성지위위원회 및 여성발전과 관련이 있을때에는 다른 정부간 기구에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성향상국은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의 이행을 위한 전담기구로 지정되었다. 위 31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여성지위위원회의 임무에 비추어, 여성향상국의 기능도 평가될 필요가 있다. 사무총장은 유엔의 일반에 산안에서 특히 충분한 인력 및 재정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여성향상국이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모할 것이 요청된다.

328. 여성향상국은 여성지위위원회를 위한 정책연구에 성영향분석의 적용을 통하여, 또한 기타 보조기구들의 지원을 통하여 여성발전 장애요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4차 세계여성회의 이후에는 여성향상국은 1996-2001년 동안의 체제 전반에 걸친 여성발전 중기계획의 개정을 준비하는데 조정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여성발전을 위한 유엔기구내의 조정을 위한 사무국으로의 서비스를 계속하여야 한다. 여성향상국은 행동강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가위원회,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기관 및 비정부기구와 정보교환을 계속하여야 한다.

기타 유엔사무국의 부서

329. 유엔사무국의 여러 부서들은 조정된 행동강령의 이행에 있어 그들이 어떻게 가장 잘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들의 프로그램을 검토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을 이행하기 위한 제안들은 1998~2002년 기간을 위해 제안된 유엔 중기계획뿐만 아니라 1996-2001년 기간의 여성발전을 위한 체제 전반에 걸친 중기 계획의 개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행동의 내용은 관련기구들의 임무에 의할 것이다.

330. 사무국의 모든 활동에 성관점이 핵심적인 시각으로 도입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그리고 새로운 연계가 사무국에 개발되어야 한다.